



의정활동보고서



제251회 정례회(2011. 11. 7 ~ 12. 1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40일간의 일정
으로 제251회 2차 정례회를 개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먼저, 반갑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경북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3백만 도민은 물론,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의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도
감사와 위로,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일부 국책사업의 유치 무산 등
으로 다소 아쉬움이 있긴 하였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 간의
무한한 신뢰와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한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준공 등을
통하여 국가가 실시한 전국 시도민 경제적 행복지수 1위,
또 며칠전 금년도 정부 합동평가에서 1위를 함으로써 도민
에게 행복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에 대한 믿음을 주는 등
의회와 경북 도정과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다행
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계획되어 있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과 함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도민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이번회기는 연말까지 계속되는 장기간의 회기인 만큼,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행운과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7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孝

차 례

I. 개 황	153
II. 의사일정	157
III. 의안처리	170
IV. 민원처리	171
V. 본회의 보고사항	173
VI. 5분 자유발언	188
□ 나현아 의원(의성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188
□ 전찬걸 의원(울진 / 문화환경위원회)	191

부 록

<input type="checkbox"/> 조례안(10건)	197
<input type="checkbox"/> 예산안(4건)	265
<input type="checkbox"/> 건의안(1건)	409
<input type="checkbox"/> 결의안(1건)	412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는 2011년 11월 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12월 16일까지 40일간의 회기 동안 5차의 본회의와 38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1월 7일(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11월 22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았다.

곧이어 이어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의원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문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책, 밭농업 직불제 선제적 실시, 경북북부 보육정보센터 설립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추재천 의원은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매입비용 부담금에 대한 문제, 학교 수도요금 감면, 무상급식 문제, 다문화가정 어머니 출신국가 방문사업, 도청 신도시 도립 공공

도서관 건립, 수도권 지역에 제2경북학숙 건립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기획경제위원회 김세호 의원은 저수지 관리대책, 지하수 관리대책, 노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11월 23(수)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3차 본회의에서도 3명의 의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이경임 의원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한 경상북도의 대책, 구제역 원인규명, 교육현장의 성범죄 및 성추행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문화환경위원회 김창숙 의원은 낙동강 사업의 문제점과 국비예산 확보방안, 무상급식 경비지원 대책, 특별장학금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였고, 농수산위원회 강영석 의원은 도청 이전과 관련한 신도시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시행자의 시행능력의 재검토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12월 8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4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나현아 의원과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전찬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15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안건 심사에서는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마지막으로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5차 본회의에서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립 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

특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7개 반의 감사반을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하여 72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예산운용상황,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69건, 건의·촉구사항 194건, 미담·수범사례 5건, 제도개선이 3건으로 총 271건을 확정하여 도 및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다. 집회일시 : 2011년 11월 7일(월)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1년 11월 7일 ~ 12월 16일(40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5회(누계 36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38	2	4	5	5	3	5	6	8	0
누 계	214	17	28	28	22	20	27	22	29	21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회수

3. 활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7(월)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11. 22(화)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기타안전(道·교육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input type="checkbox"/>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추재천 의원(교육위원회) ○ 김세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1. 23(수)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경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김창숙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 	
12. 8(목) 11:00 (제4차)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현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전찬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 8(목) 11:00 (제4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 ○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2.16(금) 11:00 (제5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 16(금) 11:00 (제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립 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 ○ 경상북도 주택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비 고
11. 25(금) 10: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예산안 ○ 201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12(월) 10: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제252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등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비고
11. 8(화)~ 11. 21(월)	<input type="checkbox"/>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일자리경제본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그린카 부품진흥원, 경상북도개발공사, 대구경북연구원,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11. 24(목)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201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5(금)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201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일자리경제본부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의 ○ 201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8(월)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201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안	
12. 12(월) 11:00 (제4차)	<input type="checkbox"/>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비 고
11. 8(화)~ 11. 21(월)	<input type="checkbox"/>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감사관실, 행정지원국,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전문간호센터, 공무원교육원 ○ 경북도립대학, 경북학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포항의료원, 청소년수련센터, 김천의료원 청소년지원센터, 안동의료원	
11. 24(목)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201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감사관실, 행정지원국	
11. 25(금)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201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보건복지여성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11. 28(월)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201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8(목) 14:00 (제4차)	<input type="checkbox"/>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input type="checkbox"/> 조례안심사	
12. 12(월) 11:00 (제5차)	<input type="checkbox"/>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행정지원국 <input type="checkbox"/> 조례안심사	

<문화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비 고
11. 8(화)~ 11. 21(월)	<input type="checkbox"/>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특별관리단,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 안용복재단,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생활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문화재단연구원 ○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현장확인 ○ 청도(송서2리) 문화재발굴 현장확인	
11. 24(목)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201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11. 25(금)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201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input type="checkbox"/> 조례 등 안전심사 ○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11. 28(월)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201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 환경특별관리단, 보건환경연구원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8(목) 15:00 (제4차)	<input type="checkbox"/>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 환경특별관리단, 문화관광체육국 ○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2(월) 11:00 (제5차)	<input type="checkbox"/>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 환경해양산림국 및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 ○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보전전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비고
11. 8(화)~ 11. 21(월)	<input type="checkbox"/>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시험장, 가축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상주감시험장, 구미화훼시험장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장확인 - 영주 천부산권역, 예천 회룡포권역	
11. 28(월)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201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농업기술원 소관	
11. 29(화)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201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농수산국 소관 <input type="checkbox"/> 조례 등 안전심사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12(월) 14: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 농업기술원 소관 ○ 농수산국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비 고
11. 8(화)~ 11. 21(월)	<input type="checkbox"/>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종합건설사업소, 건설 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 경주소방서, 고령소방서, 영주소방서,	
11. 22(화)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 24(목)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201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도청이전본부 ○ 소방본부	
11. 25(금)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201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건설도시방재국	
11. 28(월) 11:00 (제4차)	<input type="checkbox"/> 201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도청이전 추진본부, 소방본부	
12. 12(월) 11:00 (제5차)	<input type="checkbox"/>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건설도시방재국,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주택조례안	

〈교육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비 고
11.8(화)~ 11.21(월)	<input type="checkbox"/>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상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청 ○ 직속기관 : 도교육연구원, 도교육연수원, 도교육정보센터, 화랑교육원, 도과학교육원, 도립도서관, 도학생문화회관	
11.23(수)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 2012년도 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2012년도 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1.25(금)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심사 등 ○ 도교육청 소관	
11.28(월)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심사 등 ○ 지역교육청 소관	
11.29(화) 11:00 (제4차)	<input type="checkbox"/>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심사 등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직속기관 심사 및 본청	
12.12(월)1 1:00 (제5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input type="checkbox"/>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 도교육청 소관 일체	
12.16(금)1 0:00 (제6차)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정			심 사 대 상
일 자	시 간	소요	
제2차 예결특위 11. 30 (수)	10:30~12:00	90'	1.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제안설명(행정지원국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교육청)
	12:00~13:00	60'	중 식
	13:00~18: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답변(교육청 계속)
제3차 예결특위 12. 1 (목)	10:30~12:00	90'	2.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기획조정실
	12:00~13:00	60'	중 식
	13:00~14:00	60'	• 기획조정실(계속)
	14:00~16:00	120'	• 일자리경제본부
	16:00~17:00	60'	•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17:00~18:00	60'	• 미래전략기획단, 환경특별관리단
제4차 예결특위 12. 2 (금)	10:30~12:00	90'	2.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답변 • 보건복지여성국
	12:00~13:00	60'	중 식
	13:00~14:40	100'	• 투자유치본부
	14:40~15:40	60'	• 행정지원국
	15:40~17:30	110'	•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 이전추진본부
	17:30~18:00	30'	• 공보관실, 감사관실

일 정			심 사 대 상
일 자	시 간	소요	
제5차 예결특위 12. 5 (월)	10:30~12:00	90'	2.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질의·답변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12:00~13:00	60'	중 식
	13:00~14:00	60'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계속)
	14:00~14:20	20'	• 의회사무처
	14:20~16:00	100'	• 문화관광체육국
	16:00~18:00	120'	•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제6차 예결특위 12. 6 (화)	10:30~12:00	90'	2.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질의·답변 • 소방본부
	12:00~13:00	60'	중 식
	13:00~14:00	60'	• 소방본부(계속)
	14:00~15:00	60'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5:00~17:30	150'	※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17:30~18:00	30'	1.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 토론 및 의결 2.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토론 및 의결

일 정			심 사 대 상
일 자	시 간	소요	
제8차 예결특위 12. 13 (화)	10:30~12:00	90'	1. 2011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공무원 교육원, 경북도립대학
	12:00~13:00	60'	중 식
	13:00~15:30	150'	• 환경특별관리단, 환경해양산림국 보건복지 여성국, 행정지원국, 보건환경연구원
	15:30~15:50	20'	• 의회사무처
	15:50~18:00	150'	•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산국,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농업기술원, 소방본부
제9차 예결특위 12. 14 (수)	10:30~12:00	90'	2.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제안설명(행정지원국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교육청)
	12:00~13:00	60'	중 식
	13:00~15:00	120'	■ 질의·답변(교육청 계속)
	15:00~17:30	150'	※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17:30~18:00	30'	1. 2011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및 의결 2.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및 의결

Ⅲ. 의안처리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부결	폐안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원 안					
			수 정							
계	31 (203)	32 (199)	22 (160)	10(1) (37)	(2)		(2)	(2)		
조 례 안	소 계	15 (105)	16 (101)	11 (76)	5(1) (23)	(2)		(2)	(2)	
	의회 제안	4 (32)	4 (30)	4 (24)	(6)			(1)	(1)	
	도지사 제출	9 (57)	10 (55)	5 (40)	5(1) (14)	(1)		(1)	(1)	
	교육감 제출	2 (16)	2 (16)	2 (12)	(3)	(1)				
규 칙 안	(2)	(2)	(2)							
예산·결산	4 (13)	4 (13)	(4)	4 (9)						
동의·승인	5 (22)	5 (22)	4 (19)	1 (3)						
건의 안	1 (3)	1 (3)	1 (3)							
결 의 안	1 (21)	1 (21)	1 (19)	(2)						
기 타 안	5 (37)	5 (37)	5 (37)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2건)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달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		
누 계	3		3	3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 어업	기 타
계	3 (42)	2 (8)	(5)	1 (7)	(12)	()	(3)	(3)	(1)	(3)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1			1						
행 정 보 건복 지	1	1								
문 화 환 경										
농 수산										
건 설 소 방										
교 육	1	1								
특 별 위 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2 (42)	2 (37)	()	()	(4)	1 (1)
의회운영						
기획경제						1
행 정 보건복지	1	1				
문화환경						
농 수 산						
건설소방						
교 육	1	1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2011. 6. 1부터 타기관 민원은 상임위 회부전 이송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10건(조례안 9, 동의안 1)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지사 (11. 10. 2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1. 11. 2)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	"
"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1. 11. 2)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 (2011. 11. 2)
"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
"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11. 10. 28)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 (2011. 11. 2)

2. 조례공포 사항 : 10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1. 10. 18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 10. 31 (제3279호)
"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 교육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1. 11. 3 (제3280호)
"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2011. 11. 7 (제3281호)
"	"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조례	" (제3282호)
"	"	경상북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 (제3283호)
"	"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284호)
"	"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285호)
"	"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 (제3286호)
"	"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287호)
"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288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농수산물 위원회	10. 25 \	포항	○ 사업장 현지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강구 • 어촌마을 소득증대 방안 모색
의회운영 위원회	11. 1 \	제주	○ 선진의회정활동 및 운영위원 마인드함양 • 의회운영 현황 비교 분석 • 제주도의회 및 농업현장 방문
	11. 2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 산의 날 기념 및 경상북도 산림문화 축제 참석
 - 일 시 : 2011. 10. 19(수) 11:00
 - 장 소 : 상주 박물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강영석, 김기홍, 이시하 의원
- 경상북도 중견간부 양성교육과정 출강
 - 일 시 : 2011. 10. 19(수) 14:00
 - 장 소 :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 참 석 : 황이주 의원
- 경상북도 적십자 상임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1. 10. 19(수) 18:00
 - 장 소 : 대구 인터블고호텔
 - 참 석 : 최우섭 의원
- 제19회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참석
 - 일 시 : 2011. 10. 20(목) 09:30
 - 장 소 : 영주 서천둔치
 - 참 석 : 도기욱, 박성만 의원
- 제7회 경상북도 영어응변대회 참석
 - 일 시 : 2011. 10. 20(목) 11:00
 - 장 소 : 성주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정영길 의원

-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1. 10. 20(목) 14:00
 - 장 소 : 구미 원호초등학교
 - 참 석 : 박태환 의원

- 농암 ~ 산양간 도로 건설공사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1. 10. 20(목) 14:30
 - 장 소 : 문경 무운고개
 - 참 석 : 이상효 의장, 고우현 위원장, 강영석, 이시하, 한재석 의원

- 낙동강 국화축제 참석
 - 일 시 : 2011. 10. 21(금)
 - 장 소 : 구미 옥성화훼단지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 영명학교 과학교실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1. 10. 21(금) 10:00
 - 장 소 : 영명학교
 - 참 석 : 김영기 위원장

- 건강증진사업 포럼 참석
 - 일 시 : 2011. 10. 21(금) 10: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박병훈 의원

- **행복한 가게 사랑나눔 행사 참석**
 - 일 시 : 2011. 10. 21(금) 11:00
 - 장 소 : 포항 종합경기장
 - 참 석 : 김희수, 장두욱 의원

- **2011 경상북도 도민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1. 10. 21(금) 16:00
 - 장 소 : 경주 EXPO
 - 참 석 : 쏠 도의원

- **한자녀 더 갖기운동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1. 10. 22(토) 09:00
 - 장 소 : 구미 금오산분수광장
 - 참 석 : 박태환, 채옥주 의원

- **제3회 낙동미로 녹색자전거 대행진 참석**
 - 일 시 : 2011. 10. 22(토) 14:00
 - 장 소 : 경주 서천둔치
 - 참 석 : 이상호 의장, 박병훈, 최우섭, 최학철 의원

- **세계 청년유림대회 참석**
 - 일 시 : 2011. 10. 22(토) 14:00
 - 장 소 : 안동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김명호, 이영식 의원

- **강정·고령보 개방행사 참석**
 - 일 시 : 2011. 10. 22(토) 18:00
 - 장 소 : 강정·고령보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관광섭 의원

- **2011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 일 시 : 2011. 10. 23(일)
 - 장 소 : 구미1대학 운동장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 **2011년 경상북도지사배 피부미용 경진대회 및 기자제 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1. 10. 23(일) 10:30
 - 장 소 : 경상1대학 통합문화관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 **도지정 시범학교 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1. 10. 24(월) 10:00
 - 장 소 : 봉곡초등학교
 - 참 석 : 박태환 의원

- **경북 교육 책사랑 축제 참석**
 - 일 시 : 2011. 10. 24(월) 10:00
 - 장 소 : 경주 예술의 전당
 - 참 석 : 이 달, 최우섭 의원

- **경북농민사관학교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1. 10. 24(월) 11:00
 - 장 소 : 경북도립대학
 - 참 석 : 이상용 위원장, 도기욱, 정상진 의원

- **대구경북연구원 제185차 대경컬로퀴엄 참석**
 - 일 시 : 2011. 10. 24(월) 16:00
 - 장 소 :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김세호 의원

-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1. 10. 25(화)
 - 장 소 : 구미 도새마을회관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전인철 의원

- **도지정 시범학교 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1. 10. 25(화) 14:00
 - 장 소 : 구미 인동고등학교
 - 참 석 : 박태환 의원

- **제2기 경북 여성아카데미 참석**
 - 일 시 : 2011. 10. 25(화) 14:30
 - 장 소 : 구미 새마을회관
 - 참 석 : 김대호, 변우정 의원

- **KBS 열린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1. 10. 25(화) 20:00
 - 장 소 : 안동 시민운동장
 - 참 석 : 고우현 위원장, 김명호, 도기욱, 박성만, 박진현, 이경임, 이시하, 홍광중 의원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정례회의 주재**
 - 일 시 : 2011. 10. 26(수) ~ 10. 28(금)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 **박정희 대통령 32주년 추도식 참석**
 - 일 시 : 2011. 10. 26(수)
 - 장 소 : 박정희대통령 생가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 **제52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 및 역대 수상자 포럼 참석**
 - 일 시 : 2011. 10. 26(수) 11:00
 -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이상효 의장, 박병훈, 최학철 의원

- **도청이전신도시의 합리적 대중교통체계 구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1. 10. 26(수) 14:00
 - 장 소 :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
 - 참 석 : 도기욱 의원

- 2011 종가포럼 참석
 - 일 시 : 2011. 10. 26(수) 14:00
 - 장 소 : 경주 EXPO
 - 참 석 : 박병훈 의원

- 낙동강 전국 사진공모전 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1. 10. 26(수) 17:00
 - 장 소 :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 참 석 : 김명호, 이영식 의원

- 전국운영위원장 회의
 - 일 시 : 2011. 10. 27(목)
 - 장 소 : 충북 청남대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 정무부지사 내정자 간담회
 - 일 시 : 2011. 10. 27(목)
 - 장 소 : 운영위회의실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및 운영위원

- 2011년 권역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석
 - 일 시 : 2011. 10. 27(목) 11:00
 - 장 소 : 영남복합물류기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김희원 의원

- 경북 학생 음악제 참석
 - 일 시 : 2011. 10. 27(목) 11:00
 - 장 소 : 경주 예술의 전당
 - 참 석 : 박병훈, 이 달, 최우섭 의원

- 제32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참석
 - 일 시 : 2011. 10. 27(목) 11:30
 - 장 소 :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 참 석 : 장경식, 장세현 위원장, 김말분, 이정호, 장두욱, 한창화 의원

- 도 지정 통일교육 도시범학교 공개 참석
 - 일 시 : 2011. 10. 27(목) 14:00
 - 장 소 : 영주 동부초등학교
 - 참 석 : 홍광중 의원

-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1. 10. 27(목) 15:00
 - 장 소 :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제14회 문경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1. 10. 27(목) 18:00
 - 장 소 : 문경 시민운동장
 - 참 석 : 고우현 위원장, 이시하 의원

- Y-SMU 경북청년세마을운동 포럼 창립대회 참석
 - 일 시 : 2011. 10. 28(금)
 - 장 소 : 구미 도새마을회관
 - 참 석 : 김대호, 전인철 의원

- 제48회 경북도 학생종합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1. 10. 28(금) 10:00
 - 장 소 : 영천시민운동장
 - 참 석 : 한혜련 의원

- 경북도의회 ↔ 해군 제1함대 사령부 자매결연 참석
 - 일 시 : 2011. 10. 28(금) 14:00
 - 장 소 : 강원도 동해시(해군 제1함대)
 - 참 석 : 이상효 의장, 송필각 부의장, 김기홍, 김말분, 김원석, 김창숙, 나현아, 박진현, 이경임, 이시하, 이왕식, 전찬걸, 채옥주 의원

- 제4회 선덕여왕 추모축제 참석
 - 일 시 : 2011. 10. 29(토) 14:00
 - 장 소 : 경주 원석컨벤션홀
 - 참 석 : 채옥주 의원

- 2011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 축제 참석
 - 일 시 : 2011. 10. 30(일) 10:00
 - 장 소 : 안동 시민생활체육공원
 - 참 석 : 김명호, 이영식 의원

-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1. 10. 31(월) 10:30
 - 장 소 : 의성 종합운동장
 - 참 석 : 고우현 위원장, 김명호, 나현아, 윤성규, 이왕식, 한재석, 홍진규 의원

- 경북 교육 삼락회 총회 참석
 - 일 시 : 2011. 10. 31(월) 11:00
 - 장 소 : 경상북도교육연수원
 - 참 석 : 박태환, 홍광중 의원

- 낙동강 비룡교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1. 10. 31(월) 15:00
 - 장 소 : 예천군 풍양면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고우현 위원장, 김명호, 정상진 의원

- KTX 김천(구미)역 개통 1주년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1. 11. 1(화)
 - 장 소 : KTX 김천(구미)역
 - 참 석 : 배수향 의원

- 2011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국제포럼 참석
 - 일 시 : 2011. 11. 1(화) 09:30
 - 장 소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 참 석 : 박진현, 한혜련 의원

- 제13회 경상북도 학생축제 참석
 - 일 시 : 2011. 11. 1(화) 14:00
 - 장 소 : 경산 실내체육관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김영식, 김원석, 김창숙, 박태환, 윤성규, 최우섭, 추재천 의원

- 근로자 문화센터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1. 11. 1(화) 14:00
 - 장 소 : 구미 4공단
 - 참 석 : 김대호, 변우정, 전인철 의원

- 도·영양군 ↔ STX 에너지 MOU 체결 참석
 - 일 시 : 2011. 11. 1(화) 17:00
 - 장 소 : 대외통상교류관
 - 참 석 : 이상용 위원장

- 왜관 ~ 가산간 도로 건설공사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1. 11. 2(수) 10:30
 - 장 소 : 칠곡 종합운동장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추재천 의원

- 2011 경상북도자원봉사 대회 참석
 - 일 시 : 2011. 11. 2(수) 11:00
 - 장 소 : 김천 실내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배수향 의원

○ 독도교육 실적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1. 11. 2(수) 14:00
- 장 소 : 경북도학생문화회관
- 참 석 : 김말분, 전찬걸 의원

○ 서울시의회 안동방문 환영행사 참석

- 일 시 : 2011. 11. 2(수) 17:00
- 장 소 : 하회마을 탈 박물관
- 참 석 : 김명호, 이영식 의원

○ 경북 농업 대축전 참석

- 일 시 : 2011. 11. 3(목) 10:30
- 장 소 : 구미 박정희 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고우현, 김영기, 윤창욱, 이상용
위원장, 강영석, 곽광섭, 김기홍, 김대호, 김명호,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성만, 박진현, 박태환, 변우정, 배수향, 심정규,
이영식, 이왕식, 장두욱, 전인철,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최학철, 한창화, 한혜련, 황이주, 홍진규
의원

○ 제5회 경상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1. 11. 4(금) 11:00
- 장 소 : 포항 종합운동장
- 참 석 : 이상효 의장, 장경식, 장세헌 위원장, 김말분,
김희수, 채옥주, 한창화 의원

-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 참석
 - 일 시 : 2011. 11. 4(금) 11:30
 - 장 소 : 경산 컨벤션웨딩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김영식, 김창숙, 윤성규 의원

- 전국 시·도의회 의정교류 행사 참석
 - 일 시 : 2011. 11. 4(금) 14:00
 - 장 소 : 울산시 의회
 - 참 석 : 이상효 의장

- 2011 사과 홍보행사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1. 11. 4(금) 14:00
 - 장 소 : 서울광장
 - 참 석 : 이상용 위원장, 이왕식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1년 12월 8일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나현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성) ◎

<<노인건강과 생활체육이 연계된 지원체계 마련 촉구 및 개발방안>>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11.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농촌지역은 3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 경북의 고령화 비율은 16.7%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특히 군위는 39.4, 의성군은 38.5%로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건강보험의 적자를 야기하는 중요 요인으로서 2015년도 5조 원, 2020년도에는 1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보험의 근원이 흔들리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위·의성지사에서 1년간

약 3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에서 건강한 삶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달에 의한 평균수명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100세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100세 시대는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경상북도의 노인복지 정책을 보면 보호를 위한 지원, 소일거리 중심의 일자리 사업, 여가문화 활동 지원 등에 금년 한해 3,800억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 예산에는 4,000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심리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전무한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34개 생활체육 연합회를 중심으로 연합회당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북은 이미 고령사회이며 일부 시·군은 초고령사회에 있습니다. 고령사회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무위고를 극복하기 위한 일거리와 문화여가 활동을 통한 노후생활 영위가 바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심리적 건강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후생활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소개)

예, 방금 보신 내용은 10년 전부터 의성지역에서 주 3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45군데에서 1,300여 명의 생활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선도입니다. 국선도를 통하여 정신적 수련과 신체적 건강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백만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령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생활체육연합회 지원으로는 고령시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지원 정책도 중요하겠으나 미래를 내다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건강과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노인복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1년 12월 8일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전찬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울진) ◎

<<한국전쟁 후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촉구>>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북은 역사의 고비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 밖으로부터의 시련을 극복하고 언제나 역사와 나라 발전의 중심에서 자정과 영광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에서 낙동강 방어전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큰 역할을 했으며,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정의로운 우리 경북인의 정신은 아직도 면면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에 공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 학살은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시작되어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까지 계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경북도 여러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알려진 사건만도 부역혐의 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이 있으며, 부역혐의 희생사건은 인민군 점령시기에 우리 군·경이 부역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민간인들을 집단 살해한 사건이며, 국민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당시 도내 지역에 주둔하여 활동했던 군·경이 좌익활동과 무관한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입니다.

우리 도내 민간인 학살 희생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밝혀진 희생자 수가 총 3,475명으로 이 중 부역혐의 279명, 보도연맹 사건 1,470명, 미군폭격 299명, 기타 1,427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도내 민간인 학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한 39건 중 36건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로 규명 결정이 내려져서 그나마 희생자와 유가족의 참혹했던 아픔을 헤아리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진실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 및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억울한 희생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와 도 차원에서 제도적·정책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기록을 정정할 것,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의 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와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 도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과 다양한 추모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각 시·군마다 위령탑을 건립하여 불행한 역사 속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고향을 달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연 1회 정부에서 주는 작은 금액으로 실내체육관 등에서 흰 천에 명단이 적힌 영혼들에게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위령탑 건립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며, 위령탑 건립을 위하여 해당 시·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도에서는 위령탑 규모와 지역실정에 맞는 건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이미 반세기가 넘어 6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거 암울했던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규명된 진실의 토대 위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 위로하고 화해와 화합을 이루어 내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3백만 도민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16건(원안가결 11, 수정가결 5)
- 예산안 : 5건(수정가결 4)
- 건의안 : 1건(원안가결)
- 결의안 : 1건(원안가결)

■ 조 례 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주택 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제 1항 중 “월 2,642,000원”을 “월 2,84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7 조(월정수당 지급기준)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월 <u>2,642,000원</u>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 7 조(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 <u>2,845,000원</u>…………….</p> <p>②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3228호(2011. 1.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중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부 칙

-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한시기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제 3 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제과학진흥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문화
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 ②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 중 “경제교통정책과장”을 “민생경제교통과장”으로, “관광산업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③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제과학진흥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④경상북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경제교통정책과장”을 “민생경제교통과장”으로, “미래전략산업과장”을 “신성장산업과장”으로, “관광산업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환경정책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1. 1. 3)</p> <p><u>제 2 조(한시기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u></p> <p><u>제 3 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1. 1. 3)</p> <p><u>〈삭 제〉</u></p> <p><u>제 2 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⑩ (현행과 같음)</u></p>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중 계란 “9”를 “10”으로, “2011. 12.
31”을 “2012. 12. 31”로 하고, “쌀산업FTA대책과”란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한시 정원표					[별표 4] 한시 정원표				
기관별	정 원		존속 기한	비 고	기관별	정 원		존속 기한	비 고
	계	내 역				계	내 역		
⋮					⋮				
낙동강 살리기 사업단	9	일반직: 3급 1. 4급 1. 5급 이하 7	2011. 12.31	낙동강살리기 사업단장 낙동강사업 지원팀장	⋮ ⋮ ⋮ ⋮ ⋮	10	일반직: 3급 1. 4급 1. 5급 이하 8	2012. 12.31	⋮ ⋮ ⋮ ⋮ ⋮
쌀산업 FTA 대책과	1	일반직: 4급 1	2011. 12.31	쌀산업FTA 대책과장		삭제			
⋮					⋮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민간 단체의 국제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국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국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3 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 4 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자매우호도시, 개도국 도시 또는 민간단체와의 교육·문화·예술·경제·체육·청소년 등 국제협력사업 및 활동
2. 도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토론회 등 각종

행사 또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3. 외국의 도시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경상북도의 홍보 활동
4.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우호 증진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화사업

제 5 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도지사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상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 및 활동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수익금으로 한다.

제 6 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여부에 관한 사항
5.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 7 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한다.

1. 국제교류협력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국제교류협력의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도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 8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 10 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투자유치본부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및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다만,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변경·결산 및 기타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금관리 대장

(단위 : 원)

연월일	예 금			인 출			잔액
	재 원	예금종류	금액	기간	적요	금액	

【별지 제2호 서식】

현금출납부

(단위 : 원)

연월일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액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 4 조제3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 5 조를 삭제한다.

제 7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시설종사자의 복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따로 정하며,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에 의한다. 단, 촉탁의사의 경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 9 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제1항제1호, 제4호”를 “제4

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4 조(입소대상) ① (생략) 1. ~ 3. (생략) 4. <u>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60세 이상의자</u> 5. (생략) ② (생략)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기준 연령 미만의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p> <p>제 5 조(우선권 부여) 제4조제1항의 규정 <u>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입소대상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한 본인일부 부담금 면제 및 감면대상을 우선으로 한다.</u></p> <p>제 7 조(운영인력) ① ~ ③ (생략) ④시설종사자의 복무는 「경상북도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며, 보수는 <u>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u> 단, 촉탁의사의 경우는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p> <p>제 9 조(이용료) ①이용료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u>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 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수가 범위내로 한다.</u></p> <p>② (생략) ③제4조제1항제1호, 제4호에 의한 입소 대상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p>	<p>제 4 조(입소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삭제></p> <p>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p> <p><삭제></p> <p>제 7 조(운영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설종사자의 복무는 「<u>근로기준법</u>」에 준하여 따로 정하며, 보수는 <u>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에 의한다.</u> 단, 촉탁의사의 경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제 9 조(이용료) ①..... <u>보건복지부장관</u>..... </p> <p>② (현행과 같음) ③제4조제1항제1호..... </p>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경상북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 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 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경상북도 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도지사는 경상북도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 4 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 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3.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5. 해외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제 7 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 8 조(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선택기본항목은 도지사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 9 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 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 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도지사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 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시군 전출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도지사는 후생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 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회의) ①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수당지급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7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 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북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1년 12월 12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에 공무원 가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협의하는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도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함.

2. 주요 내용

- 안 제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를 “심의를 거쳐”로 함.
- 안 제6조제1항의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제4호중 “가족”을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함.
- 안 제14조제2항제2호의 “도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함.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를 “심의를 거쳐”로 하고,
- 안 제6조제1항의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제4호중 “가족”을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 안 제14조제2항제2호의 “도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p>안 제 3조(적용범위) ①<생략> ② <생략> ③도지사는 경상북도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p>	<p>안 제 3조(적용범위) ①<생략> ② <생략> ③도지사는 경상북도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p>	<p>- 한글 맞춤법에 의한 수정</p>
<p>제 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5.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6. <생략></p>	<p>제 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5. <삭제> 5. (제정안과 같음)</p>	<p>-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가족을 배우자 또는 자녀로 명확히 규정함. -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음으로 삭제함.</p>
<p>제 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도의원 의원 3. <생략> ③ <생략></p>	<p>제 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삭제> 2. (제정안과 같음) ③ <생략></p>	<p>- 공무원 후생복지 협의회에 도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인 협의회에 도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p>

경상북도립 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2항 중 “80명 이내”를 “90명 이내”로 하고, 동조 제3
항중 “9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한다.

제 3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국악단의 예술감독겸 지휘자와 교향악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예술단을 지휘·감독하며 단원의 기량 연마와
공연기획·제작 등 공연업무를 전담한다.

제 6 조제1항 중 “지휘자”를 “국악단의 예술감독겸 지휘자와 교향
악단의 지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단원”을 “국악단의
예술감독겸 지휘자와 교향악단의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으로
한다.

제 11조제1항 중 “지휘자와 악장”을 “국악단의 예술감독겸 지휘자,

안무자, 악장과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악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위촉을 위한 평정결과 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1년 12월 8일

제안자 : 문화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3조, 제6조, 제11조에서 국악단의 예술감독 직책을 신설한 데 대하여, 지휘자와의 의견 충돌 등으로 예술단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타시도의 경우에도 예술감독과 지휘자가 함께 있는 예술단이 거의 없으며,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예술감독 직책을 신설하여 지휘자와 함께 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휘자의 명칭을 예술감독겸 지휘자로 하여 위촉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의 해촉 사유에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떨어진 자를 해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하여, 도립예술단 복무규정 제22조에서 실기평정, 근무평정, 경력평정을 망라한 평정결과를 반영하여 재위촉토록 한 규정과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17조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데 대하여는 지휘자의 예술성이나 독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제4항”, “제6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7호”, “제17조”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4항중 『예술감독과』를 『예술감독겸 지휘자와』로,
-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중 『예술감독과 지휘자, 안무자』를 『예술감독겸 지휘자』로,
- 안 제11조제1항중 『예술감독과 지휘자』를 『예술감독겸 지휘자』로,
- 안 제12조제1항제7호중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떨어진 자』를 『평정결과 평가기준에 미달한 자』로,
-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18조를 제17조로 함.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 3 조(단장 등의 직무) ①~③(생략) ④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주를 지휘한다.</p>	<p>제 3 조(단장 등의 직무) ①~③(현행과 같음) ④국악단의 예술감독과 교향악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예술단을 지휘감독하며 단원의 기량연마와 공연 기획, 제작 등 공연업무를 전담한다.</p>	<p>제 3 조(단장 등의 직무) ①~③(현행과 같음) ④국악단의 예술감독겸 지휘자와 교향악단의 지휘자는.....</p>
<p>제 6 조(자격과 위촉) ①지휘자는 전문지식과 기획력을 갖춘 자 중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단원은 해당 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갖춘 자 중 공개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p>	<p>제 6 조(자격과 위촉) ①국악단의 예술감독과 지휘자, 안무자와 교향악단의 지휘자..... ②국악단의 예술감독과 지휘자, 안무자와 교향악단의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p>	<p>제 6 조(자격과 위촉) ①국악단의 예술감독겸 지휘자와 교향악단의 지휘자..... ②국악단의 예술감독겸 지휘자와 교향악단의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p>
<p>제 11 조(위촉기간) ①지휘자와 악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 11 조(위촉기간) ①국악단의 예술감독과 지휘자, 안무자, 악장과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악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 11 조(위촉기간) ①국악단의 예술감독겸 지휘자, 안무자, 악장과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악장.....</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2조(해촉) ①(생략) 1.~6.(생략)</p> <p>7.(생략)</p>	<p>제12조(해촉) ①(현행과 같음) 1.~6.(현행과 같음) 7. 재위촉을 위한 <u>설기</u> <u>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u> <u>히 떨어진 자<신설></u> 8. (현행 제7호와 같음) <u>제17조(자문위원회) 예술</u> <u>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u> <u>사항 자문 등을 위해 경</u> <u>상북도립예술단 자문위원</u> <u>회(이하 "자문위원회"로 한</u> <u>다)를 둘 수 있다.</u> 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 도로 정한다. ②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신설></p>	<p>제12조(해촉) ①(현행과 같음) 1.~6.(현행과 같음) 7. 재위촉을 위한 <u>평정</u> <u>결과 평가 기준에 미</u> <u>달한 자</u> 8. (개정안과 같음) 〈삭제〉</p>
<p>제17조(생략)</p>	<p>제18조(현행 제17조와 같음)</p>	<p>제17조(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경상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제 3 조(자료의 제공)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관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 1항에 의해 제공받은 자료는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환수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 및 법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5 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유관기관 및 법인은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운동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관기관 및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보조금 결산서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사업의 평가 등) ①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법인의 보조사업 수행 상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1년 11월 25일

제안자 : 문화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에 국외소재문화재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를 반영하여 동일하게 하고, 반복해서 사용되는 어구나 단어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할 때에는 약칭할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만들고, 이후부터는 그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3조제1항의 『도지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사업실적』도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규정에서 사용하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중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보조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조사업 수행 상황에 대하여』로 수정하며,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외소재 문화재”라 함은 경상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말한다』를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경상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로,
- 안 제3조제1항중 『도지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 안 제5조제2항중 『사업실적』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로,
- 안 제6조제2항중 『운영전반에 관하여』를 『보조사업 수행 상황에 대하여』로 하고,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함.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외소재문화재”라 함은 경상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말한다.</p>	<p>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경상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p>
<p>제 3 조(자료의 제공) ①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p>	<p>제 3 조(자료의 제공)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관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p>
<p>제 5 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생략) ②유관기관 및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보조금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 5 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생략) ②유관기관 및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보조금 결산서와 <u>보조사업 실적보고서</u>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 6 조(사업의 평가 등) ① (생략)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법인의 <u>운영진반에 관하여</u>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p>	<p>제 6 조(사업의 평가 등) ① (생략)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법인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p>
(신설)	<p>제 8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부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국가 환경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부,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을 “환경부,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으로 한다.

제23조의2 중 조제목(경상북도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을 (녹색경북21 추진협의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상북도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녹색경북21 추진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경북의제21”을 “녹색경북2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1년 12월 12일

제안자 : 문화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제1조(목적)에서 “경상북도”를 “도”로 약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상북도”로 쓰고 있는데, 이를 “도”로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함.

2. 주요골자

- “조례 제12조제1항”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 제12조제1항중 “경상북도의”를 “도의”로 함.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 1 조 중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 4 조제1호 중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른 기본계획”을 “국가 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른 도 환경보전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 8 조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하고 “환경기획담당사무관”을 “환경기획총괄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제명변경 환경정책
제 1 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 정책 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 4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4.(생략) <신설> 5. (생략)	제 4 조(기능) 1. 국가 환경 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른 도 환경보전계획..... 2. ~ 4.(현행과 같음) 5.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
제 8 조(간사와 서기) ①(생략) ②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기획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현행과 같음) ②.....녹색환경과장.....환경기획총괄사무관.....	도 직제 개편에 따른 자구수정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조제1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 8 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제 9 조제3항 중 “경상북도농정심의회”를 “경상북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3 조(기금의 조성) ① (생략)</p> <p>1. ~ 4. (생략)</p> <p>②(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 3 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p>
<p>제 6 조(기금의 관리) ① (생략)</p> <p>1. 「<u>농업협동조합법</u>」 제3조의 <u>규정에</u> <u>의한</u> 농업협동조합</p> <p>② ~ ⑤ (생략)</p>	<p>제 6 조(기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1. 「<u>농업협동조합법</u>」 제2조의 <u>규정에</u> <u>의한</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 8 조(기금사업의 대상) (생략)</p> <p>1. ~ 7. (생략)</p> <p>8. 1지역 1명품 육성사업</p> <p>9. ~ 10. (생략)</p>	<p>제 8 조(기금사업의 대상)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p> <p>9. ~ 10. (현행과 같음)</p>
<p>제 9 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제1항의 의한 심의회의 기능은 경상 북도 농정심의회가 대행한다.</p>	<p>제 9 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현행 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u>경상북도</u>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u> <u>회</u>.....</p>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제 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한다.

제 4 조제 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6항과 제 7항을 신설한다.

⑤ 위촉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친환경농업관련 대학교수, 친환경농업인단체 대표,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친환경농산물유통업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⑥ 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하고 중요한 심의·의결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성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위촉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회개최 후 자동 해촉 된다.
- ③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중 “증대방안 모색”을 “증대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을 “친환경농업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 7 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 9 조제1항 중 “육성”을 “발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4 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p> <p>① (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 ④ (생략)</p> <p>⑤위촉위원은 <u>도의원, 친환경농업관련 학과 대학교수, 친환경농산물생산자 대표, 소비자 대표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 4 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1명을 포함하여 15명.....</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u>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친환경농업관련 대학교수, 친환경농업인단체 대표,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친환경농산물유통업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u></p> <p>⑥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하고, <u>중요한 심의·의결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성한다.</u></p> <p>⑦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p>
<p>제 5 조(위원의 임기 및 운영)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 5 조(위원의 임기 및 운영) ①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위촉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p>	<p>②위촉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회 개최 후 자동 해촉된다.</p> <p>③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 6 조(위원회의 기능) (생략)</p> <p>1. (생략)</p> <p>2. <u>친환경농업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u></p> <p>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생산량 <u>증대방안 모색</u></p> <p>4. (생략)</p> <p>5. (생략)</p> <p>6. <u>기타</u>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p>	<p>제 6 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친환경농업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u></p> <p>3.<u>증대방안에 관한 사항</u></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p>
<p>제 7 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p> <p>①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u>강구</u>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 7 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p> <p>①.....<u>마련</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9 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p> <p>①도지사, 시장·군수, 관련기관, 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선진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u>육성</u>에 노력한다.</p> <p>② (생략)</p>	<p>제 9 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p> <p>①.....<u>발전</u>.....</p> <p>②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농산물과 식품”을 “농수산물과 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 3 조제1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0조”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2 조(정의) (생략)</p> <p>1. “농수산물수출품”이라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6호 내지 제8호에서 정의하는 <u>농산물과 식품 및 「수산업법」</u> …………… ……………(이하생략)……………</p> <p>2. (생략)</p> <p>3. “신선농산물”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 1호에서 정의한 농작물재배업…………… ……………(이하생략)……………</p> <p>제 3 조(도지사 및 농어업인의 책무)</p> <p>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0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및 식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 2 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u>농수산물과 식품</u>…………… ……………(이하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3.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u>」 …………… ……………(이하생략)……………</p> <p>제 3 조(도지사 및 농어업인의 책무)</p> <p>①……………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u>제59조</u>…………… ……………(이하생략)……………</p>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주택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 3 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및 10년 단위 주택종합 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 가. 주택 및 택지의 현황
 - 나. 주택건설계획
 - 다. 택지수급계획
 - 라. 주택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 마. 주택건설 자재의 수급계획
 - 바.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 사.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 아.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 자. 그 밖에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
 - 가.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 나.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 다. 주택의 형별·규모별·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 라. 주거수준의 목표
 - 마. 제1호 각 목의 사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추진계획
 - 바.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 사.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 4 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법 제85조 및 영 제115

조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택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
5.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6.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의 결정”

제 5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주택·건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제2항2호 및 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6 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9 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 10 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①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안의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단지 안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사업

제11조(지원절차) ①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14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통보 받은 즉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신고 및 사업완료후 지원금 지급신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사업완료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12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관리실태가 우수한 공동주택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와 우수단지 조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④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반 구성 및 신청절차,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본문 중 “법 제85조 및 영 제115조”를 “법 제85조 및 영 제115조와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

제5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제6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의 결정”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주택분야”를 “주택·건축분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제1호 “단지 안의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호 “단지 안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사업”

안 제11조제2항의 “제12조”를 “제4조”로 하고,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심의위원회”를 “경상북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로 하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 까지를 삭제한다.

안 제17조를 안 제12조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도지사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와 우수단지 조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주택 조례안	수 정 안
<p>제 4 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별 제85조 및 영 제1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택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신설> 5. <신설> 6. <신설> <p>제 5 조(구성) ①생략</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주택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③생략 ④생략</p> <p>제 10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p> <p>①생략</p> <p>②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 	<p>제 4 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별 제85조 및 영 제115조와 제11조제2항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과 같음. 2. 종전과 같음 3. 종전과 같음. 4.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5.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사업의 결정 6.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의 결정 <p>제 5 조(구성) ①종전과 같음</p> <p>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과 같음. 2. 종전과 같음. 3. 주택·건축분야에..... ③종전과 같음 ④종전과 같음 <p>제 10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p> <p>①종전과 같음</p> <p>②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지 안의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 시설,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택 조례안	수정안
<p>2.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p> <p>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11조(지원절차) ①생략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생략 ④생략 ⑤생략</p> <p>제12조(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13조(구성) 제14조(위원장) 제15조(운영) 제16조(수당) 제17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생략 ②생략 ③도지사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와 우수단지 조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생략</p>	<p>2. 단지 안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사업</p> <p>3. <삭제></p> <p>제11조(지원절차) ①종전과 같음 ②..... 제4조.....경상북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③종전과 같음 ④종전과 같음 ⑤종전과 같음</p> <p>제12조 (삭 제) 제13조 (삭 제) 제14조 (삭 제) 제15조 (삭 제) 제16조 (삭 제) 제12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종전과 같음 ②종전과 같음 ③도지사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와 우수단지 조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④종전과 같음</p>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소			세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 일	
신 청 내 용					
사업명	소 요 예 산			사 업 내 용	비 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체 부담액		
<p>「경상북도 주택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관리주체 (인)</p> <p>경상북도지사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 공 일
신 청 내 용					
사업명	소 요 예 산			사 업 내 용	비 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체 부담액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 주택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관리주체 (인)</p> <p>시장·군수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공 전·후 사진 1부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1부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1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4 호 중 “영 제9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영 제90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영 제105조의3에”를 “영 제91조의3에”로 한다.

제 4 조제 1 항 중 “학교의”를 “유치원 이외의 학교”로 하여 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
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 4 조제 2 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업료 분할 징수표(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기 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 반 기		하 반 기	
일 자	3. 1 ~ 5. 31	6. 1 ~ 8. 31	9. 1 ~ 11. 30	12. 1 ~ 익년 2월말

[별표 2]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제4항 관련)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액	비 고
해당 월 또는 해당 기 시작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해당 월 또는 해당 기 시작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 이후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2 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p> <p>1. ~ 3. (생략)</p> <p>4. 영 제9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p> <p>5.~ 6. (생략)</p> <p>7. 영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p> <p>8. (생략)</p> <p>제 4 조(징수방법) <신설></p> <p>①학교의 수업료는 4분기(방송 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② ~ ⑤ (생략)</p>	<p>제 2 조(징수금액)</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p> <p>.....</p> <p>5.~ 6. (현행과 같음)</p> <p>7. 영 제91조의3에.....</p> <p>.....</p> <p>8. (현행과 같음)</p> <p>제 4 조(징수방법) ①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p> <p>②유치원 이외의 학교.....</p> <p>.....</p> <p>.....</p> <p>.....</p> <p>③ ~ ⑥ (현행 ② ~ ⑤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수업료 분할 징수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업료 분할 징수표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 반 기		하 반 기			상 반 기		하 반 기	
일자	3.1~5.31	6.1~8.31	9.1~11.30	12.1~익년 2월말	일자	3.1~5.31	6.1~8.31	9.1~11.30	12.1~익년 2월말
[별표 2]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제4항 관련)				
반환사유발생일		반 환 액		비 고	반환사유발생일		반 환 액		비 고
1분기 시작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해당 월 또는 해당 기 시작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1분기 시작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 이후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해당 월 또는 해당 기 시작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 이후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1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예 산 안

-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상북도의회)
- 201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상북도의회)
-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경상북도의회)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지사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1. 14,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11. 11. 3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12. 1 : 상정·질의)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12. 2 : 상정·질의)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12. 5 : 상정·질의)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12. 6 : 상정·질의)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12. 7 : 토론·의결)

3.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윤 종 진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4. 2012년도 재정운용 방향

-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구석구석 돈 되는 경북관광 집중 투자
- 서민이 대접 받는 따뜻한 경북 복지 구현
-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지속 확충
- 재정건전성·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도정역점시책에 집중투자 등

5. 예 산(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135,725	100.0	5,450,934	100.0	684,791	12.6
일 반 회 계	5,150,000	83.9	4,662,530	85.5	487,470	10.5
특 별 회 계	985,725	16.1	788,404	14.5	197,321	25.0
의료급여기금운영	422,572	6.9	395,623	7.3	26,949	6.8
치 수 사 업	44,240	0.7	24,456	0.4	19,784	80.9
경북도립대학운영	9,110	0.1	7,882	0.1	1,228	15.6
광역교통시설	4,321	0.1	1,793	0.0	2,528	141.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4,170	0.9	45,250	0.8	8,920	19.7
학교용지부담금	1,312	0.0	0	0.0	1,312	100.0
지역개발기금운영	450,000	7.3	313,400	5.7	136,600	43.6

※ 재정자립도(도분청) : 2010(21.7%) / 2011(21.4%) / 2012(22.5%)

2) 총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135,725	100.0	5,450,934	100.0	684,791	12.6
자 체 수 입	1,774,747	28.9	1,466,716	26.9	308,030	5.7
지방세 수입	1,100,100	17.9	981,000	18.0	119,100	12.1
세 외 수 입	674,647	11.0	485,716	8.9	188,930	38.9
경상적수입	66,650	1.1	63,510	1.2	3,140	4.9
임시적수입	607,996	9.9	422,206	7.8	18,791	44.0
의 존 수 입	4,360,978	71.1	4,360,978	73.1	376,761	8.6
지방교부세	980,921	16.0	897,462	16.5	83,459	9.3
보 조 금	3,150,057	51.3	2,871,756	52.7	278,302	9.7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30,000	3.8	215,000	3.9	15,000	7.0

3) 총괄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135,725	100.0	5,450,934	100.0	684,791	12.6
일반공공행정	1,082,179	17.6	892,094	16.4	190,084	21.3
공공질서 및 안전	314,964	5.1	256,619	4.7	58,345	22.7
교 육	8,653	0.1	8,353	0.2	300	3.6
문화 및 관광	387,127	6.3	300,823	5.5	86,304	28.7
환 경 보 호	549,931	9.0	452,427	8.3	97,504	21.6
사 회 복 지	1,647,521	26.9	1,546,968	28.4	100,553	6.5
보 건	64,390	1.1	63,840	1.2	549	0.9
농림해양수산	911,980	14.9	899,407	16.5	12,573	1.4
산업중소기업	184,947	3.0	142,065	2.6	42,882	30.2
수송 및 교통	275,366	4.5	290,807	5.3	△15,440	△5.3
국토 및 지역개발	293,301	4.8	221,828	4.1	71,473	32.2
과 학 기 술	16,163	0.3	11,509	0.2	4,654	40.4
예 비 비	51,500	0.8	56,923	1.0	△5,423	△9.5
기 타	347,703	5.7	307,271	5.6	40,432	13.2

나) 조직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135,725	100.0	5,450,934	100.0	684,791	12.6
의 회 사 무 처	12,983	0.2	12,507	0.2	476	3.8
공 보 관 실	2,799	0.1	2,570	0.1	229	8.9
미래전략기획단	2,865	0.1	1,451	0.0	1,414	97.5
도청이전추진본부	77,421	1.3	25,712	0.5	51,709	201.1
환경특별관리단	1,037	0.0	0	0.0	1,037	100.0
기 획 조 정 실	764,905	12.5	614,675	11.3	150,230	24.4
일자리경제본부	191,701	3.1	156,863	2.9	34,837	22.2
공 무 원 교 육 원	6,001	0.1	4,760	0.1	1,241	26.1
감 사 관 실	390	0.0	390	0.0	0	0.0
보건복지여성국	1,681,854	27.4	1,580,892	29.0	100,962	6.4
행 정 지 원 국	478,281	7.8	436,805	8.0	41,475	9.5
환경해양산림국	771,203	12.6	670,048	12.3	101,155	15.1
보건환경연구원	8,894	0.1	8,575	0.2	318	3.7
농 수 산 국	682,229	11.1	671,162	12.3	11,067	1.7
농 업 기 술 원	50,411	0.8	53,559	1.0	△3,148	△5.9
투 자 유 치 본 부	66,154	1.1	50,198	0.9	15,956	31.8
문화관광체육국	383,126	6.2	298,810	5.5	84,316	28.2
건설도시방재국	727,391	11.9	674,167	12.4	53,224	7.9
낙동강살리기사업단	7,924	0.1	2,675	0.1	5,249	196.2
소 방 본 부	209,047	3.4	177,232	3.3	31,815	18.0
경 북 도 립 대 학	9,110	0.2	7,882	0.1	1,228	15.6

다) 성질별(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135,725	100.0	5,450,934	100.0	684,791	12.6
인 건 비	269,436	4.4	237,233	4.4	32,202	13.6
물 건 비	133,808	2.2	126,614	2.3	7,194	5.7
경 상 이 전	2,378,690	38.8	2,180,151	40.0	198,540	9.1
자 본 지 출	2,423,521	39.5	2,184,225	40.1	239,296	11.0
용 자 및 출 자	247,601	4.0	165,400	3.0	82,201	49.7
보 전 재 원	149,050	2.4	151,751	2.8	△2,701	△1.8
내 부 거 래	372,520	6.1	339,503	6.2	33,016	9.7
예비비 및 기타	161,100	2.6	66,057	1.2	95,043	143.9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150,000	100.0	4,662,530	100.0	487,470	10.5
지 방 세 수 입	1,100,100	21.4	981,000	21.0	119,100	12.1
세 외 수 입	215,044	4.2	171,514	3.7	43,530	25.4
경 상 적 수 입	26,869	0.5	26,588	0.6	281	1.1
임 시 적 수 입	188,175	3.7	144,925	3.1	43,249	29.8
지 방 교 부 세	980,921	19.1	897,462	19.3	83,459	9.3
보 조 금	2,803,935	54.5	2,547,554	54.6	256,381	10.1
지 방 채 및 예 치 금 회 수	50,000	1.0	65,000	1.4	△15,000	△23.1

2)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 기능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150,000	100.0	4,662,530	100.0	487,470	10.5
일반공공행정	632,199	12.3	578,712	12.4	53,487	9.2
공공질서 및 안전	314,964	6.1	256,619	5.5	58,345	22.7
교육	4,219	0.1	4,436	0.1	△217	△4.9
문화 및 관광	387,127	7.5	300,823	6.5	86,304	28.7
환경 보호	549,931	10.7	452,427	9.7	97,504	21.6
사회 복지	1,224,949	23.8	1,151,345	24.7	73,604	6.4
보건	64,390	1.3	63,840	1.4	549	0.9
농림해양수산	911,980	17.7	899,407	19.3	12,573	1.4
산업중소기업	130,777	2.5	96,815	2.1	33,962	35.1
수송 및 교통	271,045	5.3	289,014	6.2	△17,968	△6.2
국토 및 지역개발	247,749	4.8	197,372	4.2	50,377	25.5
과학기술	16,163	0.3	11,509	0.3	4,654	40.4
예비비	51,500	1.0	56,923	1.2	△5,423	△9.5
기타	343,007	6.7	303,289	6.5	39,719	13.1

나) 조직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150,000	100.0	4,662,530	100.0	487,470	10.5
의 회 사 무 처	12,983	0.3	12,507	0.3	476	3.8
공 보 관 실	2,799	0.1	2,570	0.1	229	8.9
미래전략기획단	2,865	0.1	1,451	0.0	1,414	97.5
도청이전추진본부	77,421	1.5	25,712	0.6	51,709	201.1
환경특별관리단	1,037	0.0	0	0.0	1,037	100.0
기 획 조 정 실	314,905	6.1	301,275	6.5	13,630	4.5
일자리경제본부	137,531	2.7	111,613	2.4	25,917	23.2
공 무 원 교 육 원	6,001	0.1	4,760	0.1	1,241	26.1
감 사 관 실	390	0.0	390	0.0	0	0.0
보건복지여성국	1,259,282	24.5	1,185,269	25.4	74,013	6.2
행 정 지 원 국	478,281	9.3	436,805	9.4	41,475	9.5
환경해양산림국	771,203	15.0	670,048	14.4	101,155	15.1
보건환경연구원	8,894	0.2	8,575	0.2	318	3.7
농 수 산 국	682,229	13.3	671,162	14.4	11,067	1.7
농 업 기 술 원	50,411	1.0	53,559	1.2	△3,148	△5.9
투 자 유 치 본 부	66,154	1.3	50,198	1.1	15,956	31.8
문화관광체육국	383,126	7.4	298,810	6.4	84,316	28.2
건설도시방재국	677,518	13.2	647,918	13.9	29,600	4.6
낙동강살리기사업단	7,924	0.2	2,675	0.1	5,248	196.2
소 방 본 부	209,047	4.1	177,232	3.8	31,815	18.0

다)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150,000	100.0	4,662,530	100.0	487,470	10.5
인 건 비	265,759	5.2	234,027	5.0	31,731	13.6
물 건 비	128,925	2.5	121,843	2.6	7,081	5.8
경 상 이 전	1,910,980	37.1	1,746,392	37.5	164,588	9.4
자 본 지 출	2,369,447	46.0	2,137,211	45.8	232,236	10.9
용 자 및 출 자	38,301	0.7	6,400	0.1	31,901	498.5
보 전 재 원	14,330	0.3	20,230	0.4	△5,900	△29.2
내 부 거 래	370,759	7.2	339,503	7.3	31,255	9.2
예비비 및 기타	51,500	1.0	56,923	1.2	△5,423	△9.5

다. 특별회계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985,725	100.0	788,404	100.0	197,321	25.0
의료급여기금운영	422,572	42.9	395,623	50.2	26,949	6.8
치 수 사 업	44,240	4.5	24,456	3.1	19,784	80.9
경북도립대학운영	9,110	0.9	7,882	1.0	1,228	15.6
광역교통시설	4,321	0.4	1,793	0.2	2,528	141.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4,170	5.5	45,250	5.7	8,920	19.7
학교용지부담금	1,321	0.1	0	0.0	1,321	100.0
지역개발기금운영	450,000	45.7	313,400	39.8	136,600	43.6

2)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985,725	100.0	788,404	100.0	197,321	25.0
세 외 수 입	459,603	46.6	314,203	39.9	145,400	46.3
경상적 수입	39,781	4.0	36,922	4.7	2,859	7.7
임시적 수입	419,822	42.6	277,281	35.2	142,541	51.4
보 조 금	346,122	35.1	324,201	41.1	21,921	6.8
지 방 채 및 예치금 회수	180,000	18.3	150,000	19.0	30,000	20.0

3) 특별회계 세출예산

가)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985,725	100.0	788,404	100.0	197,321	25.0
일반공공행정	449,980	45.7	313,383	39.8	136,597	43.6
교 육	4,434	0.5	3,917	0.5	517	13.2
사 회 복 지	422,572	42.9	395,623	50.2	26,949	6.8
산업중소기업	54,170	5.5	45,250	5.7	8,920	19.7
수송 및 교통	4,321	0.4	1,793	0.2	2,528	141.0
국토 및 지역개발	45,552	4.6	24,456	3.1	21,096	86.3
기 타	4,696	0.5	3,983	0.5	713	17.9

나) 조직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985,725	100.0	788,404	100.0	197,321	25.0
기 획 조 정 실	450,000	45.7	313,400	39.8	136,600	43.6
예산담당관실	450,000	45.7	313,400	39.8	136,600	43.6
일자리경제본부	54,170	5.5	45,250	5.7	8,920	19.7
에너지정책과	54,170	5.5	45,250	5.7	8,920	19.7
보건복지여성국	422,572	42.9	395,623	50.2	26,949	6.8
사회복지과	422,572	42.9	395,623	50.2	26,949	6.8
건설도시방재국	49,873	5.1	26,249	3.3	23,624	90.0
균형개발과	4,321	0.4	1,793	0.2	2,528	141.0
건축지적과	1,312	0.1	0	0.0	1,312	100.0
치수방재과	44,240	4.5	24,456	3.1	19,784	80.9
경북도립대학	9,110	0.9	7,882	1.0	1,228	15.6

다) 성질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985,725	100.0	788,404	100.0	197,321	25.0
인 건 비	3,677	0.4	3,206	0.4	471	14.7
물 건 비	4,883	0.5	4,771	0.6	112	2.4
경 상 이 전	467,710	47.5	433,759	55.0	33,952	7.8
자 본 지 출	54,074	5.5	47,014	6.0	7,060	15.0
용 자 및 출 자	209,300	21.2	159,000	20.1	50,300	31.6
보 전 재 원	134,720	13.7	131,521	16.7	3,199	2.4
내 부 거 래	1,761	0.2	0	0.0	1,761	100.0
예비비 및 기타	109,600	11.1	9,134	1.2	100,466	1,100.0

라. 계속비 사업

- 2012년도 : 계속비 사업 없음

마. 지방채

- 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채선	발행액	발행조건		
			이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계		50,000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건립	청사정비 기금	25,000	3.0%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도비
지방도사업	경상북도 지역개발 기금	25,000	3.0%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도비

-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12월말 잔액			2012년 상환액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합계	482,301	376,290	106,011	27,113	14,330	12,783
지역개발기금	315,294	256,290	59,004	21,725	14,330	7,395
공자기금	167,007	120,000	47,007	5,388	-	5,388

바. 채무부담행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채무부담 행위내용	채무부담 행위액	사유	상환계획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계				900		
소방역량 활성화	소방행정 기반구축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 장비보강	다목적 무인 방수탑차	900	원전지역대응 장비조기확보	2013년

6. 기금운용계획(안)

가.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합 계	452,093 (413,060)	33,599 (33,599)	63,667 (63,667)	10,750 (750)	324,328 (302,151)	3,849 (0)	15,544 (12,538)	357 (357)
통합관리기금	39,033			10,000	22,177	3,849	3,007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	139				19		120	
중소기업육성기금	293,142	14,000	41,626		230,375		7,142	
문화예술진흥기금	1,786	1,444			61		281	
체육진흥기금	558				1		557	
농어촌진흥기금	84,274	7,850	17,355		57,215		1,704	150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59				6		53	
포플리장학기금	10				1		9	
사회복지 기금	소 계	688	1		275		412	
	자활계정	452		1	235		215	
	장학기정	41			5		36	
	장애인계정	98			23		74	
	노인계정	97				11	87	
재해구호기금	1,142				538		604	
여성발전기금	130				7		124	
청소년육성기금	167				50		117	
다문화가족지원기금	1,337	1,200			1		137	
식품진흥기금	15,932		3,408		11,930		388	207
재난관리기금	7,951	6,105		750	255		842	
공무원주거 안정기금	5,744	3,000	1,277		1,419		49	

※ ()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합계금액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운용계획에 포함.

나.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 원리금 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 지출
합계	452,093 (413,060)	20,465 (20,465)	48,510 (48,510)	256 (256)	3,849 (3,849)	346,394 (311,354)	28,609 (28,609)	3,992 (0)	18 (18)
통합관리기금	39,033					35,040		3,992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	139	119			19	1			
중소기업육성기금	293,142	10,400	4,000			250,133	28,609		
문화예술진흥기금	1,786	500		17	1,220	50			
체육진흥기금	558	500			57	1			
농어촌진흥기금	84,274		40,000			44,274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59	58				1			
포플러장학기금	10	9				1			
사회복지 기금	소계	688	431	170		87			
	자활계정	452	230	170		52			
	장학기정	41	41						
	장애인계정	98	74			24			
	노인계정	97	86			11			
재해구호기금	1,142	442		187	300	213			
여성발전기금	130	120				10			
청소년육성기금	167	121				45			
다문화가족지원기금	1,337				1,337				
식품진흥기금	15,932	755	3,000	52		12,108			18
재난관리기금	7,951	7,000			916	35			
공무원주거 안정기금	5,744	9	1,340			4,395			

※ ()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합계금액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운용계획에 포함.

다.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1년도말 현재액 [㉠]	2012년도 조성 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 + [㉡]	
		수 입	지 출	증 감 [㉡]		
합 계	477,157 (389,980)	117,015 (110,160)	101,850 (97,857)	15,166 (12,302)	492,322 (402,282)	
통합관리기금	87,177	6,856	3,992	2,863	90,040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	3,428	120	119	598	3,429	
중소기업육성기금	230,375	62,767	43,009	19,758	250,133	
문화예술진흥기금	7,026	1,725	517	1,209	8,235	
체육진흥기금	15,880	557	500	57	15,937	
농어촌진흥기금	57,215	27,058	40,000	△12,942	44,274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1,516	53	58	△5	1,511	
포플러장학기금	263	9	9	0	263	
사회복지기 금	소 계	11,975	414	601	△188	11,787
	자활계정	6,305	216	400	△184	6,122
	장학기정	1,039	36	41	△5	1,034
	장애인계정	2,140	74	74	0	2,141
노인계정	2,490	87	86	0	2,490	
재해구호기금	17,764	604	629	△25	17,739	
여성발전기금	3,546	124	120	4	3,549	
청소년육성기금	3,387	117	121	△5	3,382	
다문화가족지원기금	2,386	1,337	0	1,337	3,722	
식품진흥기금	11,930	4,003	3,825	178	12,108	
재난관리기금	21,872	6,947	7,000	△53	21,818	
공무원주거 안정기금	1,419	4,326	1,349	2,977	4,395	

- ※ 1. ()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합계금액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운용계획에 포함.
 2. 수입과 지출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 또는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으로 예치금(회수),
 예탁금(상환)은 제외

7. 검토의견

가. 총괄

- 내년도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4% 중반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1. 6월) ◆

구분	2009실적	2010실적	2010전망	2012전망
세계경제	△0.5%	5.1%	4.3%	4.5%
우리나라	0.2%	6.1%	4.5%	4.2%

- 국내경제도 세계경제 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5% 내의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내년 세입 예산은 소비·투자 등 내수경기 호전에 따라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국고보조금은 시행 성과가 낮은 사업 및 유사·중복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소요인과 사회복지사업 확충 등 확대요인이 공존하며, 지방교부세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세입 규모는 확대편성하였으며,
- 세출은 서민희망, 다문화, 주거·교육 등 사회복지분야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일자리

창출, 도청이전, post낙동강 살리기 등으로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의 江·山·海를 활용한 녹색 성장축 마련 및 문화관광 자원화 등으로 재정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6% 증액 편성하였음.

-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6조 1,357 억원으로 전년도 5조 4,509억원에 비해 6,848억원(12.6%)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5조 1,5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875억원(10.5%)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85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3억원(25.0%)이 증가한 규모임.

◆ 예산(안)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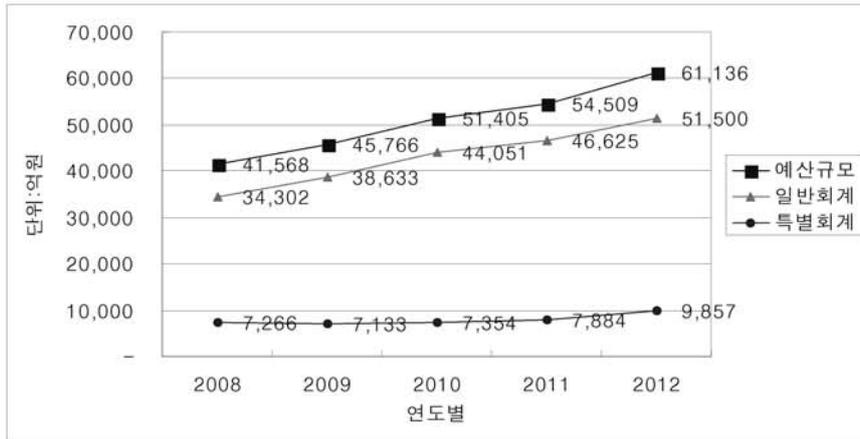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135,725	100.0	5,450,934	100.0	684,791	12.6
일반회계	5,150,000	85.5	4,662,530	85.7	487,470	10.5
특별회계	985,725	14.5	788,404	14.3	197,321	25.0

◆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 현황('08 ~ 2012) ◆

(단위 : 억원, %)

회 계 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합 계	41,568	6.4	45,766	10.1	51,405	12.3	54,509	6.0	61,357	12.6
일반회계	34,302	8.8	38,633	12.6	44,051	14.0	46,625	5.8	51,500	10.5
특별회계	7,266	△4.0	7,133	△1.7	7,354	3.1	7,884	7.2	9,857	25.0

◆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 ◆



-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통합관리 기금 포함) 등 16종의 기금조성 총 규모는 4,923억원으로 전년도 4,772억원에 비해 152억원(3.2%)이 증가하였으며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은 900억원으로 전년도 872억원에 비해 29억원(3.3%)이 증가한 규모임.

◆ 기금조성 규모 ◆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2012년말 현재액	2011년말 현재액	증 감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6종	492,322 (402,282)	477,157 (389,980)	15,166 (12,302)	3.2 (3.2)
통합관리기금	90,040	87,177	2,863	3.3

※ ()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합계금액임.

나. 세입부문

- 2012년도 총 세입예산안은 6조 1,357억원으로 이중 자체 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28.9%인 1조 7,74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080억원(5.7%)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1조 1,001억원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보통세가 8,211억원이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가 2,680억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은 110억원임.
- 내년도는 소비회복, 소득 향상으로 지방소비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취득세의 경우 경기불투명으로 증감여부가 불확실 하나, 전반적인 지방세 수입 총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는 전년대비 1,191억원(12.1%)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외수입은 총 6,746억원으로 이자수입,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67억원이며, 용자금 원금 수입, 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080억원임.
- 이월금 492억원, 전입금 329억원, 용자금 원금수입 550억원 등의 증액 편성으로 인하여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889억원(38.9%)나 늘어났음.
- 의존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71.1%인 4조 3,610억원으로 전년대비 3,768억원(8.6%)이 증가하였는데, 사회복지

사업 확충 등의 확대요인(서민희망·녹색성장 분야 증가)으로 인해 증가율이 전년보다 2.4% 늘어났음. 지방교부세는 9,809억원으로 전년대비 835억원(9.3%)이 증액 되었는데 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지방교부세 증가율('08 ~ 2012) ◆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지방교부세	7,266	12.7%	8,046	11.3%	8,189	1.8%	8,975	9.6%	9,809	9.3%

- 국고보조금은 3조 1,501억원으로 전년대비 2,783억원(9.7%)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서민희망, 다문화, 주거 등 사회복지분야 사업 확대에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남.
-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수입은 2,300억원으로 이 중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발행될 지역개발공채는 1,800억원이며,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은 총 500억원으로 이 중 250억원은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에 충당될 재원이며 이율은 3.0%,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발행하며 기채선은 청사정비 기금이고, 나머지 250억원 『지방도 사업』에 충당될 재원이며 이율은 3.0%,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이고 기채선은 경상북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발행

다. 세출부문

1) 개 괄

-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 6조 1,357억원으로 전년도 5조 4,509억원에 비해 6,848억원(12.6%)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이 전년도(6.0%)에 비해 두배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5조 1,5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857억원임.

2) 일반회계

- 총 5조 1,500억원으로 전년도 4조 6,625억원에 비해 4,875억원(10.5%)이 증가한 규모임.
- 기능별¹⁾ 편성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부문 1,116억원,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부문 1,838억원, 사회복지, 보건 부문 742억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126억원,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부문 386억원,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324억원, 기타 부문에 39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54억원을 감액하였음.
- 성질별²⁾ 편성 내용으로는 인건비 317억원 증액,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물건비 71억원 증액, 일반보상금,

1) 검토보고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표 참조

2) 검토보고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표 참조

출연금, 자치단체 이전 등 경상이전 1,646억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2,322억원 증액, 용자 및 출자 319억원,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313억원 증액하였으며, 보전재원 59억원, 예비비 및 기타 등은 54억원을 감액하였음.

3) 특별회계

- 2012년도에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 지역개발기금운영 등 총 7종이며,
- 예산규모는 9,857억원으로 전년도 7,884억원에 비해 1,973억원(25.0%)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따른 용자수요 증가로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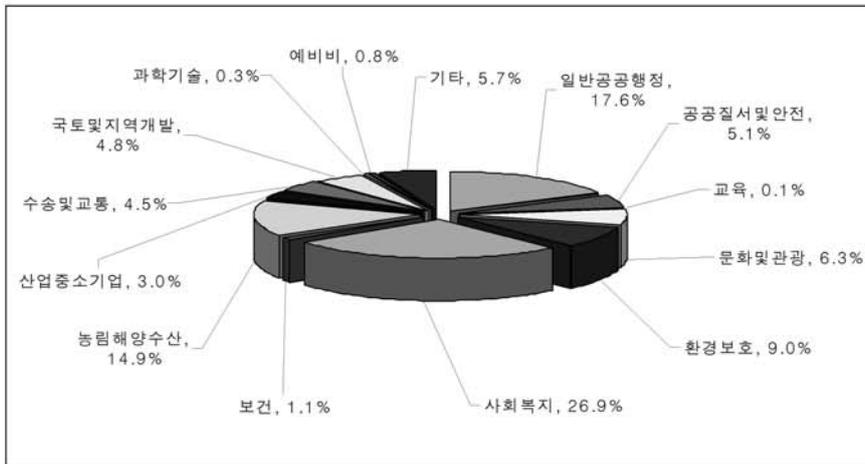
라. 기금운용계획

-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6종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나머지 기금의 운용계획은 4,131억원이며,
-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SOC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390억원임.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이나 단기 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예치 시 시중 금리의 변동을 미리 예측하여 이자수익 발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종합 검토의견

□ 분야별 예산 편성³⁾을 살펴보면



-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액된 1조 6,475억 원으로서 전체예산에서 가장 많은 분야(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보장(3,008억 원), 노후 생활 지원 강화(3,218억 원) 등이 있으며,
- 사회복지사업처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우리 道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3)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 1>에 게재

공통적인 현안사항이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또는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 중요한 국고보조사업 신설시 지방비 부담률을 사전 협의 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3%가 증액된 1조 822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차지(17.6%)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건전한 예산 운영(2,233억원), 자주재원 기반조성(208억원) 등이며, 미래 전략기획단 예산이 대폭 증액(97.5%) 계상되었고 그 외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등 지원부서의 예산이 주로 계상되었는바 예산이 균형적이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임업분야 포함)가 증액된 9,120억원으로서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업 경쟁력 제고(2,254억원), 21C 선진형 복지 농어촌 기반 구축(2,272억원) 등이 있으며, 사업 분야 예산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예산(14.9%)을 편성하고 있어 우리 道의 예산 편성이 농어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농사만 지어도 잘 살 수 있는 부자농 육성을 위해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30.2%, 40.4%가 증액된 1,849억원과 162억원으로 주요 정책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263억원),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162억원) 등이 있으며,
-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은 많이 증액 되었지만 그 규모면에서는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⁴⁾이 낮으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분야 에도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7%가 증액된 3,87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829억원), 관광자원 개발 확충(1,844억원) 등이며,
-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 중 관광자원 개발 확충 예산이 59.3%로 월등하게 높은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경상북도 관광공사 인수에 따른 출자금과 3대 문화권 사업 예산 분야로 대폭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반해 문화재(보수)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22.7%나 감소하였음.

4) 전체예산 대비 구성비 : 산업중소기업(3.0%), 과학기술(0.34%)

- 국토 및 지역개발과 수송·교통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32.2% 증액, 5.3% 감액된 2,933억원과 2,754억원으로써 전체예산의 9.3%⁵⁾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지역균형 개발 추진(519억원), 지방도 건설 확·포장(1,789억원) 등이며, 이러한 사업은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SOC 확충과 균형개발, 낙후지역 집중 개발 및 신활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 이밖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54억원(△9.5%)이 감소한 515억원의 규모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지방교육세 세입액 제외)의 1.0% 이상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 특히,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교부세 산정, 지방재정 분석 시 패널티 적용을 받는 행사성 경비와 민간단체 지원경비, 사무관리비 등은 건전예산 편성을 위해 최소화 하였으며,
- 투자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하는 한편, 중앙지원 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 편성은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보여짐.

5) 전체예산 대비 구성비 : 국토 및 지역개발(4.8%), 수송 및 교통(4.5%)

- 조직별 전년예산 대비 90% 이상 증액된 부서는 미래전략 기획단(97.5%), 도청이전추진본부(201.1%), 환경특별관리 단(100.0%), 낙동강살리기사업단(196.2%) 등 4개 부서임.
- 도청이전추진본부의 경우 전년대비 201.1%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청이전에 따른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 공사비용(500 억원)이 증액 계상함에 따른 것이며,
- 그 외 미래전략기획단은 여말선초 총절인물 현창사업비 신규 계상, 환경특별관리단은 구제역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직 신설에 따른 것이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단의 경우 낙동강 호국평화 공원조성 사업비 대폭 증액과 하천유지 관리사업 신규 계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세출예산 90% 이상 증액된 주요부서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비 고
미래 전략 기획 단	2,865	1,451	1,414	97.5%	
도청이전추진본부	77,421	25,712	51,709	201.1%	
환경 특별 관리 단	1,037	0	1,037	100.0%	
낙동강살리기사업단	7,924	2,675	5,249	196.2%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현행 택지개발지구나 공동주택 지역의 학교시설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매입 경비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도의 일반 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 경상북도에서는 2010년 정리추경과 2011년 제1회 추경을 통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으로 14억원을 납부한 상태이며, 이는 경상북도가 납부해야할 법정 부담금 427억원(10년말 현재)의 3.3% 수준으로 전국평균(43.8%)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며 미납금을 두고 현재 도 교육청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임.

◆ 학교용지매입비 경상북도 부담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학교용지 매입비 규모			道 부담액	비 고
	학 교 수	면적(m ²)	매입비 총액		
계	23		85,444	42,717	
2010	3	50,267	17,366	8,682	
2009	2	31,988	13,131	6,563	
2008	1	11,500	2,471	1,237	
2007	2	30,045	4,581	2,290	
2006	1	13,284	2,256	1,128	
'02 ~ '05	14	198,521	45,636	22,815	

□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62건에 2,828억원으로서

- 주요사업은 경상북도 관광공사 출자(303억원), 가축 매몰지 상수도 보급(408억원), 영천 하수처리장 증설(117억원),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240억원) 등이 있으며,

◆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⁶⁾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노인복지과	도립종합장사공원조성	8,820	
새마을봉사과	새마을공원테마공원조성	6,500	
문화재과	세계유산보존관리	11,572	
관광진흥과	경상북도관광공사출자	30,301	
물산업과	가축매몰지상수도보급	40,788	
"	영천하수처리장증설	11,679	
친환경농업과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24,000	
축산경영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9,016	
치수방재과	영주댐건설	13,817	
"	보현산댐건설	13,702	

- 이러한 신규사업 투자는 마무리사업의 투자재원 범위내에서 선정하되, 사업의 시급성에 의한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투자재원의 다양화, 국비확보 노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임.

□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⁷⁾ 사업

- 2012년도 당초예산 사업 중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의 사업 가운데 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 예산보다 사업비가 50%

6)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 2>에 게재

7)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 3>에 게재

이상 증액이 있는 주요사업은 『경주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95개 사업이며, 감액이 있는 주요사업은 『경북 문화 콘텐츠 지원 센터 건립지원』 등 24개 사업임.

- 이 중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 센터 조성, 낙동강 호국 평화 공원 조성 등에서는 1,000% 이상 증액이 있는 반면, 포항 의료원 기능 강화,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서는 70% 이상 감액되었음.

◆ 전년대비 주요 증감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신성장산업과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조성	3,900	156	3,744	2,400.0	
투자유치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	11,794	1,690	10,104	597.9	
"	포항외국인학교설립지원	5,000	500	4,500	900.0	
보건정책과	포항의료원기능강화	300	3,649	△3,349	△91.8	
문화예술과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건립지원	1,441	4,209	△2,768	△65.8	
녹색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	3,204	473	2,731	577.1	
"	경주쓰레기소각시설설치	20,600	3,000	17,600	586.6	
"	기후변화테마사업추진	2,145	300	1,845	615.0	
물관리과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	2,457	10,201	△7,745	△75.9	
농업정책과	부자마을만들기사업	1,992	5,672	△3,680	△64.9	
수산진흥과	로하스수산물식품거점단지조성	5,850	325	5,525	1,700.0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낙동강호국평화공원조성(교육및체험시설등)	2,500	129	2,371	1,837.9	

- 내년도 예산은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기간 중 세입은 연평균 약 6.6%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11 ~ 2015)의 예산과 기금수입을 합한 재정수입 연평균 7.2%보다 낮게 전망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 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 중기지방재정계획(2012 ~ 2015) 세입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계 획 기 간							평 균 신장률
	계	구성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35,068,535	100.0	6,024,604	6,525,493	7,205,013	7,526,269	7,787,156	6.6
지 방 세	5,760,159	16.4	1,025,000	1,100,100	1,154,055	1,210,733	1,270,271	5.5
세 외 수입	3,355,425	9.6	574,078	662,926	685,913	702,818	729,690	6.2
국고보조금	14,312,028	40.8	2,346,638	2,579,606	2,968,707	3,145,080	3,271,997	8.7
광특보조금	4,165,781	11.9	748,020	787,921	832,692	875,926	921,222	5.3
기 금	679,482	1.9	120,538	127,770	135,436	143,562	152,176	6.0
지방교부세	5,490,660	15.7	960,330	1,037,170	1,098,210	1,163,150	1,231,800	6.4
지 방 채	1,305,000	3.7	250,000	230,000	330,000	285,000	210,000	△4.3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건전성을 도모하고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성 등을 감안한 계획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성과 미흡사업 예산 삭감, 유사·중복사업 구조 조정 등 예산심의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계 획 기 간							평 균 신장률
	계	구성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35,068,535	100.0	6,024,604	6,525,493	7,205,013	7,526,269	7,787,156	6.6
일반공공행정	6,137,309	17.5	996,118	1,118,038	1,210,019	1,334,159	1,478,975	10.4
공공질서 및 안전	1,682,309	4.8	300,650	324,686	339,738	354,415	362,820	4.8
교육	49,187	0.1	9,071	10,113	9,915	10,021	10,067	2.6
문화 및 관광	2,546,546	7.3	444,121	477,912	538,729	538,307	547,477	5.4
환경보호	2,485,358	7.1	492,129	548,040	468,548	487,044	489,597	△0.1
사회복지	9,464,956	27.0	1,644,903	1,776,713	1,904,946	1,987,054	2,151,340	6.9
보건	409,534	1.2	71,010	74,975	87,846	91,700	84,003	4.3
농림해양수산	4,981,620	14.2	889,456	908,792	1,011,216	1,055,977	1,116,179	5.8
산업중소기업	1,239,036	3.5	169,776	197,833	279,136	291,608	300,683	15.4
수송 및 교통	2,175,801	6.2	323,121	328,611	495,214	511,476	517,379	12.5
국토 및 지역개발	1,650,643	4.7	290,721	329,363	402,152	391,111	237,296	△4.9
과학기술	159,288	0.5	24,178	29,013	34,070	34,993	37,034	11.2
예비비	298,000	0.8	50,000	55,000	60,000	65,000	68,000	8.0
기타	1,788,948	5.1	319,350	346,404	363,484	373,404	386,306	4.9

□ 출연금에 대해서

-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 보조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전년 대비 46.7%⁸⁾가 증가한 407억원으로 당초예산 증가율(12.6%) 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한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 신규 및 증액 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道の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도 자율적인 경영 혁신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창출 및 재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립 기반을 위한 수익 창출을 강화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8)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 고
출연금(306-01)	40,721	27,752	12,969	46.7%	

◆ 주요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⁹⁾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정책기획관	대구경북연구원운영지원	3,200	
민생경제교통과	저소득·저신용계층지원햇살론사업추진	2,750	
과학기술과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립	1,000	
신성장산업과	2단계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R&D 등)	8,190	
"	인플루엔자등백신원료맞춤형생산지원사업	1,450	
사회복지과	행복재단운영	1,700	
녹색환경과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운영	2,181	
쌀산업FTA대책과	재단법인농민사관학교설립	1,500	
기업노사지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조성	3,000	
문화예술과	(재)한국국학진흥원운영지원	2,219	

□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 민간이전 경비는 매년 지방 세수 감소 등 최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내년도 민간이전 경비(일반회계)는 98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나 증가하여 일반회계 증가율 10.5% 보다 많이 높음.

9)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 4>에 게재

◆ 민간이전 경비 편성 현황(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98,242	84,507	13,734	16.3	
민간경상보조	80,248	68,693	11,554	16.8	
민간행사보조	2,687	2,342	345	14.7	
사회복지보조	15,307	13,472	1,835	13.6	

- 이러한 민간이전 경비는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실과에 공표한 후 예산을 편성(Top-Down방식)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道의 한도액은 총 651억 8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624억원¹⁰⁾을 편성하여 한도액 대비 9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한도액 대비 86.5%보다 많이 늘어난 규모임.
- 이러한 민간이전 경비는 그 동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추진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요구 예산액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10) 2012년도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 內 반영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비 고
예산액	62,400	50,421	2,519	9,460	

※ 국고보조금(도비 부담분 포함), 국제행사, 전국단위 순회행사 비용은 제외한 금액임

- 특히, 민간행사보조사업에는 각종 축제·회의 등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바, 행사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연례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축제에 대하여는 참여도와 호응도 등을 평가하여 행사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격년제 운영, 불요불급한 행사의 과감한 폐지와 유사행사의 통폐합 등으로 의례적인 전시성 행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도정홍보비 예산과 관련하여
- 언론 공익광고,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도정현안 전략 홍보, 언론 매체를 통한 도정 광고 등 주요 도정 홍보를 위해 각 실국에 편성된 2012년도 홍보비 용도의 예산은 대략 53건에 84억 80백만원 규모임.
 - 도정을 道民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도정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도정 홍보가 필요할 것이나, 홍보 마케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필요하게 홍보 활동이 중복되는 사례 등을 예방하려면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 시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도정 홍보비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공보관실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비	620	
정책기획관	저탄소녹색성장시책홍보	250	
투자유치단	투자유치국내외시책홍보	600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세계화사업홍보	250	
관광마케팅사업단	테마관광상품홍보	300	
물산업과	세계물포럼개최추진 및 물산업육성기획물제작	425	
식품유통과	우수농특산물광고 등	460	
경마장건설지원단	말산업기획 및 시책추진	350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낙동강살리기사업홍보지원	250	
도청이전추진본부	도청이전홍보사업	310	

※ 일반운영비 통계목에 편성된 “도정홍보” 용도의 예산

□ 지방채 발행 사업은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이나 재해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데 재정 수입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조달하는 부채로서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¹¹⁾에 의거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지방채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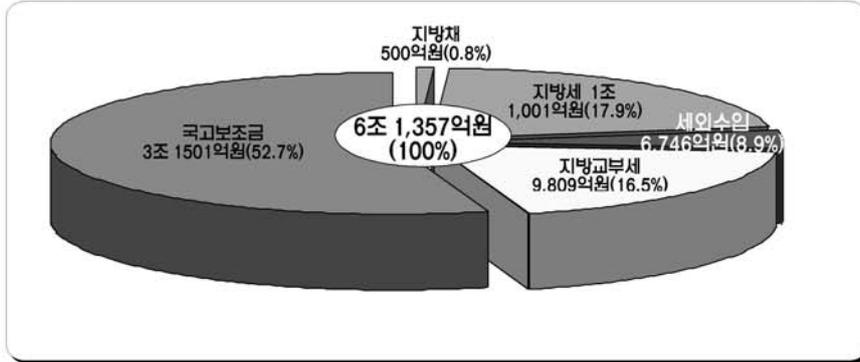
- 우리 道의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¹²⁾은 1,566억원이며, 발행액은 500억원으로 발행 한도액 대비 31.9%로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음.
- 사업별 지방채 발행 규모를 보면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에 250억원, 지방도 사업비에 25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 2011년도 12월말 현재 우리 道의 지방채 잔액 현황이 4,823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道의 재정상황, 채무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비확보와 관련하여

- 예산안 세입 구조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은 28.9%를 차지하고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6.5%, 중앙부처로부터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 증가율 5.5%를 크게 상회한 9.7% 증가된 3조 1,50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2.7%나 차지함.

12) 지방채발행 한도액 :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한도액 설정



-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첫 6조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역은 국비 확보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중앙부처로부터 지역에서 필요한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지역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회심의 과정에 있는 내년도 국비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 또한, 내년도 2013년 국비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예비타당성 조사,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반영 등 국비확보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에 미리 착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2012년도 예산(안)은

-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개칭이후 처음으로 6조원대 재원으로,
-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구석구석 돈 되는 경북관광 집중 투자, 서민이 대접받는 따뜻한 경북복지 구현,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SOC사업 지속 확충 등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 지며,

- 내년 예산이 꼭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과 경기 회복에 집중 투입됨으로써 道民들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
-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사업 현황
-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자료 1〉

◆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

(단위 : 억원)

분 야 별	2012년 일반회계			비 고
	계	국 비	도 비	
계	51,500	28,040	23,460	
일반행정·기타분야	10,309	144	10,165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150	1,957	1,193	
문화·관광분야	3,871	2,196	1,675	
환경·수질분야	5,500	4,910	590	
농림·해양수산 분야	9,120	6,589	2,531	
사회복지·보건분야	12,893	9,429	3,464	
산업·중소기업·과학분야	1,469	476	993	
지역개발·수송·교통분야	5,188	2,339	2,849	

※ 상기금액은 분야별 총규모임

일반행정 · 기타 분야

- 도민만족 행정서비스를 통한 선진행정 구현
- 교육 등을 통한 공무원 경쟁력 강화 및 사기진작

□ 투자액 - 10,309억(국 144, 도 10,165) ※ 11년 9,435억원

○ 도민만족 행정서비스

- 재정보전금 2,192억원(도)
- 원자력발전분 지역개발세 전출금 332 " (도)
-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0 " (도)
-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25 " (도)
-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지원 32 " (도)
-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16 " (도) 등

○ 인재양성 및 공무원사기진작

- 지방교육세전출금 2,036억원(도)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98 " (도)
- 경북도립대학전출금 69 " (도) 등

○ 21세기 새마을운동사업 추진

-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 65억원(국 50, 도 15)
- 새마을운동시범단지가꾸기 13 " (국 10, 도 3)
- 소공원조성사업 11 " (도)
- 저개발국새마을연수 및 보급 7 " (도)
- 새마을리더해외봉사단선발 및 교육 3 " (도)
- 대학생새마을해외봉사활동 3 " (도)
- 한국형 밀레니엄빌리지조성 2 " (도)
- 새마을역사관리모델링 1.9 " (도)

○ 예비비 등 기타

- 예비비 등 3,765억원
(국 21, 도 3,744)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재해위험요인의 근원적 해소
- 안전문화 정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투자액 - 3,150억원(국 1,957 , 도 1,193) ※ 11년 2,566억원

○ 재해·재난대비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36억원(국 548, 도 288)
-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597 " (국 495, 도 102)
-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47 " (국 36, 도 11)
-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98 " (국 85, 도 13)
- 소하천정비사업 371 " (국)
- 하도준설사업 44 " (국 33, 도 11) 등

○ 소방력 보강

- 소방장비보강 57억원(국 13, 도 44)
- 노후구급차량교체 22 " (국 11, 도 11)
- 소방청사 신·증축 65 " (도)
- 의용소방대 지원 53 " (도)
- 소방헬기 유지보수 25 " (도) 등

문화 · 관광 분야

-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 및 레저관광 수요부응
- 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 전문 · 생활체육의 연계발전과 스포츠마케팅 강화

□ 투자액 - 3,871억(국 2,196, 도 1,675) ※ 11년 3,000억원

○ 문화예술산업진흥

• 뮤지컬제작지원	17	억원(도)
•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건립	14	" (국 9, 도 5)
• 공공도서관건립지원(3개소)	26	" (국 20, 도 6)
• 예술의전당건립지원(2개소)	25	" (국 22, 도 3)
• 지역미술관건립지원(3개소)	18	" (국 9, 도 9)
• 문화바우처사업	30	" (국 27, 도 3)
•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10	" (도)
• 소천권태호선생음악관건립	13	" (국 9, 도 4)
• 안동종교타운건립지원	13	" (국 10, 도 3)
• 고령문화예술회관건립	12	" (국 2, 도 10)
• 임진란7갑주년기념행사지원	9	" (국 7, 도 2)
•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25	" (국 13, 도 12)
• 전통사찰방재 시스템구축사업	23	" (국 18, 도 5)

○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마케팅지원	
• 3대문화권사업	946억원(국 838, 도 108)
• 관광지개발 및 관광자원기반확충	362 " (국 252, 도 110)
- 문화관광자원개발	278 " (국 214, 도 64)
- 관광지개발	49 " (국 38, 도 11)
- 시군관광자원기반확충	35 " (도)
• 생태녹색관광개발	35 " (국 28, 도 8)
• 강변문화관광개발	74 " (국 57, 도 17)
•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	14 " (국 10, 도 4)
○ 전통문화유산보존관리	
•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401억원(국 348, 도 53)
• 도지정 문화재보수(이양)	65 " (도)
• 도지정 문화재보수	20 " (도)
•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64 " (국 53, 도 11)
• 세계유산보존관리	116 " (국 103, 도 13)
• 공립박물관건립지원	57 " (국 36, 도 21)
• 무형문화재전수 교육관 건립	9 " (국 7, 도 2)
•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	14 " (국 12, 도 2) 등

○ 체육융도 역량강화

• 도체육회 사업비 지원	93억원(도)
• 시군청 운동경기부 육성지원	36 " (도)
• 울릉공설운동장 건립	9 " (국)
• 도청운동경기부 육성지원	21 " (도)
• 상주 실내체육관 건립	35 " (국)
• 포항야구장 건립	10 " (국)
• 제50회 구미도민체전시설 개보수	20 " (도)
• 제51회 김천도민체전시설개보수	20 " (도)
• 국민체육센터건립(3개소)	37 " (국 22, 도 15)
• 구내장애인체육관건립	12 " (도)
• 시군생활체육지도자배치	13 " (도)
• 스포츠바우처사업지원	9 " (국 8, 도 1)
• 체육공원조성(3개소)	18 " (국 11, 도 7)
• 시군어르신체육활동지원	7 " (도) 등

환경 · 수질 분야

- 저탄소 녹색성장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 환경이용체계 확보

□ 투자액 - 5,500억원(국 4,910, 도 590) ※ 11년 4,524억원

○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하수처리장 시설확충 1,207억원(국 1,081, 도 126)
- 하수관거, 하수도정비 1,779 " (국 1,727, 도 52)
- 농어촌생활용수 및 상수도시설개선 1,176 " (국 1,068, 도 108)
- 생태하천 복원사업 57 " (국 52, 도 5)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7 " (국 11, 도 6)
- 도립공원 정비사업 13 " (도) 등

○ 건강한 생태 환경조성 및 자원순환처리

- 비위생처리 및 폐기물시설확충 318억원(국 303, 도 15)
- 자연생태공원 조성 148 " (국 114, 도 34)
- 연안정비 77 " (국 68, 도 9)
- 환경오염 및 자원순환처리 32 " (국 26, 도 6) 등

○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준비

- 개최분담금 4억원(도)
- 2012낙동강국제물주간개최 4 " (도)
- 세계물포럼개최추진 및 홍보 3 " (도)
- 개최준비포럼운영 2 " (도) 등

농림 · 해양수산 분야

- FTA대응 돈되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건설
- 농어가 소득 ·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투자액 - 9,120억원(국 6,589, 도 2,531) ※ 11년 8,993억원

○ FTA대응 경북 농어업 신성장동력 확충

- 쌀소득 등 보전직불 · 조건불리지역직불 1,017억원(국 1,008, 도 10)
-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240 " (국)
- 광역농업클러스터사업 및 향토산업육성 107 " (국 71, 도 36)
- 농민사관학교지원 30 " (도)
-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 및 농업마이스터대학 23 " (국 7, 도 16)
- FTA대응 농어업 R&D활성화사업 6 " (도) 등

○ 친환경농업육성

-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530억원(국 422, 도 108)
- 과수원예산업 경쟁력제고 286 " (국 200, 도 85)
- 중소형농기계구입 및 임대사업소지원 55 " (도)
- 새소득 작목육성 20 " (도) 등

○ 소비자중심 농식품유통 및 수출경쟁력 강화

- 농수산물식품 가공산업 육성 99억원(국 75, 도 24)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42 " (국 27, 도 15)
-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및 마케팅 강화 38 " (도)
-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9 " (국) 등

○ 21C선진형 복지농어촌 건설

- 마을종합정비 1,479억원(국 1,301, 도 178)
- 기계화 영농기반 확충 544 " (국 513, 도 31)
- 수리시설정비 및 안정된 농촌용수 공급 252 " (국 120, 도 132)
- 우수농축수산물 학교급식 84 " (국 35, 도 49)
- 농작물 재해보험료 48 " (도)
- 농업인 자녀 학자금 21 " (도) 등

○ 수입축산물 대응 축산기반 경쟁력 제고

- 축산유통 및 경쟁력 강화 182억원(국 118, 도 64)
- 가축방역사업 163 " (국 108, 도 55)
- 자급조사료생산기반 확충 135 " (국 77, 도 58)
- 살처분 보상금 지원 108 " (국 100, 도 8)
- 축산분뇨 처리시설 46 " (국 32, 도 14)
- 축산학과 실습장 설치 15 " (도) 등

○ 기르는 어업육성 및 관광 어촌건설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216억원(국 162, 도 54)
-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 137 " (국 38, 도 99)
- 환경친화적 바다목장화 실현 57 " (국 40, 도 17)
- 어촌어항관광 및 어촌 경쟁력 강화 37 " (국 29, 도 8)
- 연안어업 구조조정 26 " (국 24, 도 2) 등

○ 21C 신해양·관광산업육성

- 해양관광단지조성 29억원(국 23, 도 7)
-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15 " (도)
- 오션월드 및 스킨스쿠버리조트 조성 7 " (국 5, 도 2)
- 포스텍해양대학원 자재구입지원 7 " (도)
- 경북 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 지원 7 " (도)
- 연안정비사업보강 5 " (도) 등

○ 미래지향적 산림자원육성

- 사방사업 509억원(국 357, 도 152)
- 숲가꾸기 388 " (국 313, 도 75)
-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247 " (국 172, 도 75)
- 임도시설 217 " (국 161, 도 56)
- 산불방지대책 102 " (국 52, 도 50)
- 조림사업 82 " (국 70, 도 12)
- 산림병해충방제 80 " (국 62, 도 14) 등

사회복지 · 보건 분야

-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취약계층의 생활보장 도모
-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공공의료 기반구축으로 도민건강수준 향상

□ 투자액 - 12,893억원(국 9,429, 도 3,464) ※ '11년 12,126억원

○ 취약계층 자립의욕 고취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2,467억원(국 2,268, 도 199)
- 자활근로사업 292 " (국 279, 도 13)
- 지역공동체 및 일자리창출사업 161 " (국 115, 도 46)
- 긴급복지지원 39 " (국 36, 도 3)
- 지역자활센터건립 및 운영지원 37 " (국 30, 도 7)
- 공공근로사업 32 " (도)
- 희망키움 통장 28 " (국 26, 도 2)
- 행복재단 운영 17 " (도) 등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의지 지원

-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223억원(도)
- 장애수당지원 98 " (국 87, 도 11)
-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 34 " (국 26, 도 8)
-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14 " (도)
- 도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증축 6 " (도) 등

○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1억원(국 99, 도 12)
- 정신요양시설운영 61 " (도) 등

○ 다문화가족 지원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56억원(국 50, 도 6)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4 " (도)
- 다문화가정 언어 지원 2 " (도)
- 다문화어린이집차량운영비 1 " (도)
- 결혼이민여성 가족 다문화이해교육 1 " (도) 등

○ 보육서비스 및 아동권익 증진사업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91억원(국 1,238, 도 353)
- 보육 돌봄서비스 329 " (국 256, 도 73)
- 아동급식지원 136 " (도)
- 지역아동센터운영 69 " (국 53, 도 16)
-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 34 " (도)
-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20 " (도)
-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지원 17 " (도) 등

○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사업**

- 청소년 수련시설건립 및 개보수 54억원(국 51, 도 3)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12 " (국 9, 도 3)
- 도 청소년수련센터운영 10 " (도)
- 도 청소년지원센터운영 5 " (도) 등

○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 기초노령연금지원 3,020억원(국 2,893, 도 127)
- 노인일자리지원 157 " (국 121, 도 36)
- 화장시설설치 147 " (국 136, 도 11)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90 " (국 68, 도 22)
- 노인 돌보미지원 57 " (국 50, 도 7)
-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 54 " (국 48, 도 6)
- 경로당연료비 및 운영지원 27 " (도) 등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12억원(국)
- 국가암조기검진 및 암환자의료비사업 42 " (국 32, 도 10)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장비지원 46 " (국)
-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33 " (국 25, 도 8)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5 " (국 19, 도 6)
- 의료기능강화 3 " (국 1.5, 도 1.5) 등

산업 · 중소기업 · 과학 분야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미래성장동력산업 중점육성
- 국내외 투자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 투자액 - 1,469억원(국 476, 도 993) ※ 11년 1,111억원

○ R&D, 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

- 지역전략산업진흥지원 171억원(국 125, 도 46)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54 " (국)
-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조성 39 " (국 30, 도 9)
- 인플루엔자 등 백신원료 맞춤형 생산지원 35 " (도)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30 " (도)
-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구축 20 " (도)
-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 지원 9 " (도)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재 양성 3 " (도) 등

○ 첨단과학기술 환경조성

-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 25억원(도)
-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사업 23 " (도)
- 구미과학연구단지 육성 10 " (도)
-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립 10 " (도)
- 테크노파크운영 지원 9 " (도)
- 전기차용경량감성샤시부품연구기반구축 5 " (도)
- 차세대건설기계부품융복합설계지원센터 3 " (도) 등

○ 투자유치기반조성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18억원(국 105, 도 13)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추진 60 " (도)
- 외국인투자지역조성 토지매입비 54 " (도)
- 포항외국인학교설립지원 50 " (국 21, 도 29)
- 투자기업 입지시설지원 50 " (도)
- 투자유치설명회 및 타깃기업유치활동 15 " (도)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현대화 134억원(국 122, 도 12)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120 " (도)
- 지역맞춤형·공동체 일자리 창출 104 " (국 62, 도 42)
- 중소기업 육성지원 33 " (도)
-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30 " (도)
- 경북프라이드상품 및 글로벌마케팅 10 " (도)
- 기능경기대회 6 " (도)
- 소상공인 지원 5 " (도)

○ 국제교류 및 수출지원

- 동북아경제통상네트워크 구축 13억원(도)
- 선진행정 벤치마킹 11 " (도)
- 통상지원센터, 교류센터 운영 11 " (도)
-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7 " (도)
- 해외통상 주재관운영 6 " (도)
- 국제화그랜드플랜추진 3 " (도)

지역개발 · 수송 · 교통 분야

- 지역발전기반구축을 위한 SOC확충과 균형개발
- 낙후지역 집중개발 및 신활력사업 본격추진

□ 투자액 - 5,188억원(국 2,339, 도 2,849) ※ 11년 4,872억원

○ 도로교통망 확충

-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913억원(국 693, 도 220)
- 지방도사업 762 " (도)
- 도시토목 및 지역현안도로사업 680 " (도)
- 위험도로·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156 " (국 151, 도 5)
-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66 " (국 50, 도 16)
- 대구지하철2호선 경산연장 52 " (도)
-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37 " (국) 등

○ 도청이전 추진

- 도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 500억원(국 250, 도 250)
- 행정타운부지매입비 250 " (도)
- 도청이전 주민지원사업 17 " (도) 등

○ 낙후지역 개발 및 신활력사업

- 개발촉진지구 지원 514억원(국)
-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269 " (국 211, 도 58)
-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123 " (국)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 100 " (국 91, 도 9)
- 농공단지 조성사업 53 " (국 49, 도 4)

○ 생활교통 지원

- 시외버스 재정지원 93억원(도)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지원 51 " (도)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42 " (도)
- 여객선 운임지원 39 " (국 23, 도 16)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 " (도)
- 브랜드콜택시, 저상버스지원 6 " (도)

3대문화권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시군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8건	119,717	83,800	10,777	25,140	
포항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2,857	2,000	257	600	
경주	서라벌 연회테마단지	2,000	1,400	180	420	
김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7,572	5,300	682	1,590	
안동	유림문학 유토피아	1,857	1,300	167	390	
안동	신성현 문화단지	1,429	1,000	129	300	
구미	초전지 역사로드	2,857	2,000	257	600	
영주	무섬지리 문화경관	1,429	1,000	129	300	
상주	거꾸로옛이야기숲	857	600	77	180	
상주	낙동강 이야기나라	8,572	6,000	772	1,800	
문경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1,429	1,000	129	300	
군위	삼국유사 가온누리	5,714	4,000	514	1,200	
의성	신라본 역사지움	2,143	1,500	193	450	
의성	비봉산 푸른문화길	1,286	900	116	270	
청송	솔누리 느낌보세상	3,714	2,600	334	780	
영양	음식디미방	2,857	2,000	257	600	
영양	산촌문화 누리터	2,000	1,400	180	420	
영덕	낙동정맥 역사문화 산수길	3,143	2,200	283	660	
봉화	누정휴 문화누리	1,571	1,100	141	330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	3,143	2,200	283	660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12,715	8,900	1,145	2,670	
김천, 성주	무흘구곡 경관가도	857	600	77	180	
안동, 영주	한국문화테마파크	12,857	9,000	1,157	2,700	
안동, 봉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15,715	11,000	1,415	3,300	
구미, 고령, 칠곡	낙동강역사 너울길	2,143	1,500	193	450	
영천, 경산	동의 참 누리원	2,143	1,500	193	450	
문경, 예천	녹색문화 상생벨트	9,286	6,500	836	1,950	
고령, 성주	가야국 역사루트재현과연계자원개발	5,714	4,000	514	1,200	
울진, 울릉	수도문화나라 조성	1,857	1,300	167	390	

<자료 2>

◆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정책기획관	도정역점시책추진우수시군상사업비	1,600	
일자리창출단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시군분)	1,520	
과학기술과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	2,500	
"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립	1,000	
신성장산업과	가축질병제어바이오시큐리티개발사업	1,300	
"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사업	2,200	
에너지정책과	고효율조명기구LED교체사업	1,156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019	
"	서민층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	1,854	
"	테스트베드구축사업지원	2,599	
"	LED-IT융합산업화지원센터건립	1,000	
사회복지과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지원	2,577	
"	경상북도독립운동테마파크부지매입비	1,300	
노인복지과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신축	1,000	
"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건립	1,500	
"	도립종합장사공원조성	8,820	
여성청소년가족과	경북동남권여성발전통합센터건립	1,872	
"	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지원	5,165	
"	공공형어린이집	1,626	
보건정책과	취약지역지역응급의료기관시설장비지원	1,711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	6,500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회계계약심사과	도교육청소유토지 및 건물매입	2,000	
문화예술과	안동종교타운건립지원	1,300	
"	드라마세트장제작지원	3,000	
문화재과	세계유산보존관리	11,572	
관광진흥과	경상북도관광공사출자	30,301	
"	한옥체험명품화사업	1,365	
체육진흥과	고령국민체육센터건립	1,300	
"	의성국민체육센터건립	1,200	
"	성주국민체육센터건립	1,200	
녹색환경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	2,500	
물산업과	가축매몰지상수도보급	40,788	
"	영천하수처리장증설	11,679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지역단위통합센터)	2,031	
독도수호과	독도박물관장애인노약자편의시설설치	1,050	
산림비즈니스과	낙동정맥트레일조성	2,107	
농업정책과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	3,254	
쌀산업FTA대책과	재단법인농민사관학교설립	1,500	
친환경농업과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지원	1,000	
"	농기계임대사업소농기계구입지원	1,000	
"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24,000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2,378	
"	시설원예품질개선지원	2,471	
식품유통과	거점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보완	1,160	
축산경영과	축산학과학생실습장설치	1,500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축산경영과	학교우유급식지원	3,960	
"	살처분보상금지원	10,750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9,016	
수산진흥과	수산계특성화고교지원사업(공통프로그램운영)	1,200	
민물고기연구센터	토속어류산업화센터건립	4,000	
건축지적과	옥외광고시범거리조성사업	1,000	
치수방재과	고향의강사업시설비	1,393	
"	지방하천(관하천)수해복구사업	4,000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3,315	
"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4,680	
"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1,096	
"	영주댐건설	13,817	
"	보현산댐건설	13,702	
균형개발과	다산-화원(월성-송곡)간 광역도로확장	3,000	
낙동강살리기사업단	하천유지관리사업	3,405	
도청이전추진본부	도청이전신도시이주민지원사업	1,000	
"	도분청 및 의회신청사건립공사감리	2,000	

※ 예산액 10억원 이상만 작성함.

〈자료 3〉

◆ 전년에 대비 50% 이상 증감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정책기획관	도정주요현안사업등용역(공통)	1,500	1,000	500	50.0	
예산담당관	도정시책추진지원	600	400	200	50.0	
정보통신담당관	줌인(Zoom-in)경북구축	66	300	△234	△78.0	
일자리창출단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도분)	860	2,445	△1,585	△64.8	
"	중소기업인턴사원제	750	500	250	50.0	
"	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	6,593	2,761	3,832	138.8	
민생경제교통과	클린5일장육성사업	1,200	800	400	50.0	
"	브랜드콜텍사업지원	228	796	△568	△71.4	
"	교통연수원운영비지원	680	440	240	54.5	
과학기술과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지원	1,975	1,000	975	97.5	
신성장산업과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운영지원	300	200	100	50.0	
"	인플루엔자등백신원료맞춤형생산지원사업	1,450	900	550	61.1	
"	특허정보컨설팅사업	450	200	250	125.0	
"	창업보육센터확장사업지원	600	200	400	200.0	
"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조성	3,900	156	3,744	2400.0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섬유분야)지원	1,400	800	600	75.0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5,401	3,562	1,839	51.6	
"	국제에너지환경네트워크구축	900	200	700	350.0	
투자유치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	11,794	1,690	10,104	597.9	
"	투자유치국내외시책홍보	600	400	200	50.0	
"	투자유치설명회 및 타깃기업유치활동	1,500	500	1,000	200.0	
"	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	5,023	3,132	1,891	60.3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투자유치단	포항외국인학교설립지원	5,000	500	4,500	900.0	
"	투자유치활동국내여비	300	200	100	50.0	
기업노사지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조성	3,000	2,000	1,000	50.0	
"	중소기업디자인사업지원	300	50	250	500.0	
사회복지과	자활장려금지원	1,976	1,150	827	71.9	
"	장애인활동지원(장기요양)	16,364	3,706	12,658	341.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309	676	△367	△54.3	
"	행복재단운영	1,700	1,000	700	70.0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건립(이양)	1,500	230	1,270	552.2	
여성청소년가족과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619	338	280	82.8	
"	어린이집지원	4,718	2,800	1,918	68.5	
"	시군청소년수련시설건립	4,048	2,076	1,972	95.0	
"	도청소년수련센터오수처리장기능개보수	352	150	202	134.7	
"	도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지원	534	117	417	356.4	
보건정책과	포항의료원기능강화	300	3,649	△3,349	△91.8	
"	취약지역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	2,900	1,250	1,650	132.0	
노인전문간호센터	토지매입비	400	16	384	2400.0	
문화예술과	문화바우처사업지원	3,022	1,907	1,115	58.5	
"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건립지원	1,441	4,209	△2,768	△65.8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예진흥기금)	444	1,116	△672	△60.2	
문화재과	문화재긴급보수	300	200	100	50.0	
"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	786	3,355	△2,569	△76.6	
"	도지정문화재방재시스템구축	300	200	100	50.0	
"	중요목조문화재안전경비인력배치	1,432	898	534	59.5	
"	공립박물관건립지원	5,740	1,375	4,366	317.6	
관광진흥과	호미곶관광지개발(포항)	4,894	2,395	2,499	104.3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증감액	비율	
관광진흥과	전통한옥개보수및편의시설설치	1,025	675	350	51.9	
"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운영	310	163	147	90.2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12,415	8,035	4,380	54.5	
"	가야국역사루트재현과연계자원개발	4,514	1,806	2,708	149.9	
"	삼국유사가온누리	4,514	2,257	2,257	100.0	
"	황악산하야로비공원	5,982	2,860	3,122	109.1	
체육진흥과	전국규모각종체육대회개최지원	600	400	200	50.0	
"	시군어르신체육대회활동지원	707	419	288	68.8	
녹색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	3,204	473	2,731	577.1	
"	쓰레기소각시설설치	4,077	2,500	1,577	63.1	
"	경주쓰레기소각시설설치	20,600	3,000	17,600	586.6	
"	슬레이트처리지원	717	379	338	89.2	
"	기후변화테마사업추진	2,145	300	1,845	615.0	
"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지원	300	200	100	50.0	
물산업과	비점오염저감사업	3,207	1,543	1,664	107.8	
"	대경권블루골드클러스터구축	378	222	157	70.7	
"	제7차세계물포럼개최분담금	400	250	150	60.0	
"	도서지역식수원개발	1,335	544	791	145.3	
"	고도정수처리시설	1,932	465	1,466	313.3	
"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	2,457	10,201	△7,745	△75.9	
"	하수처리장확충(민자)	16,708	2,583	14,125	546.8	
"	하수관거정비(민자)	11,741	6,230	5,511	88.5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3,129	17,213	15,916	92.5	
"	하수관거BTL사업임대료지급	34,898	20,391	14,507	71.1	
"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23,243	7,945	15,298	192.5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1,559	17,135	14,424	84.2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증감액	비율	
해양개발과	해수욕장관리서비스센터건립	300	180	120	66.7	
"	스킨스쿠버리조트조성	650	1,300	△650	△50.0	
"	해양관광단지조성	2,939	1,690	1,249	73.9	
"	포항영일만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	1,500	900	600	66.7	
독도수호과	안용복재단출연금	900	300	600	200.0	
산림비즈니스과	생활림조성관리	611	384	228	59.3	
농업정책과	부자마을만들기사업	1,992	5,672	△3,680	△64.9	
"	농어촌진흥기금조성도비출연금	3,350	500	2,850	570.0	
쌀산업FTA대책과	FTA대응쌀 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1,500	1,000	500	50.0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혁신)	1,475	808	668	82.7	
"	농어업경영권설립지원	155	422	△267	△63.3	
친환경농업과	중소형농기계공급	1,200	800	400	50.0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486	1,146	△660	△57.6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2,134	6,754	△4,620	△68.4	
농촌개발과	권역단위마을종합정비(산촌)	1,065	2,548	△1483	△58.2	
"	권역단위마을종합정비(도시활력)	1,976	701	1,275	181.9	
"	읍면소재지종합정비(농촌)	40,588	18,606	21,982	118.1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소도읍)	3,780	9,800	△6,020	△61.4	
"	창조지역사업	2,451	1,226	1,225	99.9	
"	지표수보강개발	6,897	2,713	4,184	154.2	
"	소규모용수개발	975	3,629	△2,654	△73.1	
"	기계화경작로확포장(도시활력)	1,806	1,129	677	60.0	
축산경영과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520	260	260	100.0	
"	한우개량사업	479	308	171	55.5	
"	한우개량사업소기반시설지원	400	27	373	1359.8	
"	가축방역약품구입비	9,729	5,654	4,075	72.1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증감액	비율	
축산경영과	지열이용효율화사업(농어업에너지효율화)	741	1,676	△936	△55.8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4,137	9,891	△5,754	△58.2	
수산진흥과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481	1,356	△875	△64.5	
"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2,201	930	1,271	136.6	
"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5,525	1,950	3,575	183.3	
"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시설	3,250	1,300	1,950	150.0	
"	로하스수산물식품거점단지조성	5,850	325	5,525	1700.0	
봉화고냉지 약초시험장	시험연구포장시설현대화	1,000	9,446	△8,446	△89.4	
도시계획과	현신~사벌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3,231	16,150	△12,919	△79.9	
"	무양~남장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469	4,431	△3,962	△89.4	
"	농공단지노후공공시설물정비	343	150	193	128.9	
건축지적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활력증진)	7,946	4,121	3,825	92.8	
치수방재과	고향의강사업	6,336	3,800	2,536	66.7	
"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58,603	34,560	24,043	69.5	
종합건설사업소	교량정밀점검시설비	415	255	160	62.7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낙동강호국평화공원조성(교육 및 체험시설 등)	2,500	129	2,371	1837.9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119감염관리시스템	240	840	△600	△71.4	
"	노후구급차량교체 등	2,220	700	1,520	74.3	
"	테러 및 특수소방장비보강 (채무부담 900,000천원)	1,800	20	1,780	9450.0	

※ 예산액 3억원 이상만 작성함(비율은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작성).

<자료 4>

◆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정책기획관	대구경북연구원운영지원	3,200	
"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80	
"	영남권5개시도공동수탁과제연구지원	100	
민생경제교통과	저소득·저신용계층지원햇살론사업추진	2,750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추진	390	
"	교통연수원운영비지원	680	
과학기술과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립	1,000	
"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지원	100	
"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원	200	
신성장산업과	2단계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R&D 등)	8,190	
"	경북항공기술혁신센터(ASTIC)운영	200	
"	(재)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운영지원	200	
"	인플루엔자 등 백신원료맞춤형생산지원사업	1,450	
"	대경차세대자동차부품개발및기업지원사업	391	
"	전기차용경량감성샤시부품연구기반구축	525	
"	차세대건설기계·부품융복합설계지원센터	300	
"	경북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550	
"	포항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	300	
"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운영지원	920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지원	479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사회복지과	행복재단운영	1,700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정책개발원운영	895	
"	차세대여성체감정책단운영	80	
"	도청소년수련센터운영지원	778	
"	도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운영지원	288	
보건정책과	포항의료원채무상환	535	
"	안동의료원채무상환	35	
"	원격영상진료시스템운영	60	
인재양성과	경북학숙운영비	579	
"	경북학숙사업지원(영어학습)	222	
"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157	
새마을봉사와	도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339	
"	도종합자원봉사센터사업비지원	220	
세정과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80	
녹색환경과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운영	2,181	
물산업과	대경권블루골드클러스터구축	378	
해양개발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지원	747	
"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비구입비지원	225	
"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숙소임차비지원	150	
독도수호과	안용복재단출연금	900	
쌀산업FTA대책과	재단법인농민사관학교설립	1,500	
기업노사지원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운영비지원	560	
"	경북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조성	3,000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문화예술과	우리문화알리기한복패션소개최지원	200	
"	(재)한국국학진흥원운영지원	2,219	
"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	400	
경북도립대학	국가근로장학사업대응투자분(교육과학기술부)	12	특별회계
"	취업지원관사업운영대응투자분(고용노동부)	56	"
"	창업보육센터운영비	50	"
"	산학협력단운영지원	70	"
"	학교기업운영비	100	"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9.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증감조서 : 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준수 및 사전
의회승인 후 관련 절차 진행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1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소관부서 : 경상북도교육감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14, 경상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1. 11. 3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11. 30 : 상정·질의)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12. 7 : 토론·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4. 지방교육재정여건 및 방향

-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경기 회복

으로 지방세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 회복 수준이 불확실하여 지방세 전입금은 예년 수준의 세입상승 폭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고보조금은 교육사업의 시·도 교육청 이양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출 부분에서는 최근 추세에 따라 인건비, 복지성 경비, 수익자부담 경비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며, 또한 정부 주요정책인 5세 누리과정, 교과교실제,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에 따라 국정과제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와 신규 세출 확대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5. 예산안 주요 내용

가. 총규모

◆ 2012년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12년도 (A)	2011년도 (B)	증 감	
		A - B	증감율(%)
3,130,668	2,847,026	283,642	10.0

-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8,470억 3천만원보다 2,836억 4천만원(10.0%)이 증액된 금액임.

나.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3조 1,306억 7천만원으로

○ 이전수입은

- 총 2조 9,705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4.9%를 차지하고, 전년도 당초예산 2조 7,622억 9천만원 보다 2,082억원(7.5%)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7,370억 7천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334억 3천만원임.

○ 자체수입은

- 총 451억 2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전년도 당초예산 411억 8천만원 보다 39억 4천만원(9.6%)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주요내용은 교수-학습활동수입 309억 4천만원, 행정활동수입 5억 8천만원, 자산수입 15억원, 이자수입 121억원 등임.

○ 기타수입은

- 총 1,150억 5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7%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715억원(164.2%) 증액 편성이 되었고,
- 주요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1,150억 5천만원임.

◆ 세입예산 자원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장 관 별		2012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3,130,668	100.0	2,847,026	100.0	283,642	10.0
이 전 수 입	소 계	2,970,495	94.9	2,762,291	97.0	208,204	7.5
	중앙정부 이전수입	2,737,069	87.4	2,537,291	89.1	199,778	7.9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3,426	7.5	225,000	7.9	8,426	3.7
자 채 수 입	소 계	45,121	1.4	41,180	1.4	3,941	9.6
	교수-학습 활동수입	30,940	1.0	29,636	1.0	1,304	4.4
	행정활동수입	581	0.0	583	0.0	△2	△0.4
	자산수입	1,500	0.0	863	0.0	637	73.7
	이자수입	12,099	0.4	10,098	0.4	2,001	19.8
	잡수입	1	0.0	-	0.0	1	232.6
기 타	소 계	115,052	3.7	43,555	1.5	71,497	164.2
	전년도이월금	115,052	3.7	43,555	1.5	71,497	164.2

다.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3조 1,306억 7천만원으로

○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전년도 예산액 2조 7,221억 8천만원보다 11.0% 증가된 3조 225억 7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6.5%를 차지하며

- 인적자원운용 1조 6,205억 5천만원
- 교수 - 학습활동지원 2,367억원
- 교육격차해소 1,445억 9천만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276억 1천만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8,039억 5천만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891억 7천만원임

○ 평생·직업교육비는 전년도 예산액 84억 8천만원보다 1.1% 증액된 85억 7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3%를 차지하며

- 평생교육 55억 2천만원
- 직업교육 30억 4천만원이며

○ 교육일반비는 전년도 예산액 1,163억 7천만원 보다 14.5% 감소한 995억 3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2%를 차지하며

- 교육행정일반 273억 2천만원
- 기관운영관리 252억 6천만원
- 지방채상환및리스크 374억 5천만원
- 예비비 및 기타 95억원임

◆ 세출예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3,130,668	100.0	2,847,026	100.0	283,642	10.0
유아및초등교육	3,022,566	96.5	2,722,181	95.6	300,385	11.0
평생·직업교육	8,567	0.3	8,477	0.3	90	1.1
교육일반	99,535	3.2	116,367	4.1	△16,833	△14.5

◆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3,130,668	100.0	2,847,026	100.0	283,642	10.0	
유아 및 초등 교육	소 계	3,022,566	96.5	2,722,182	95.6	300,384	11.0
	인적자원운용	1,620,554	51.8	1,593,742	56.0	26,812	1.7
	교수학습활동지원	236,700	7.6	250,530	8.8	△13,830	△5.5
	교육격차해소	144,586	4.6	110,799	3.9	33,787	30.5
	보건/급식/체육 활동	27,611	0.9	21,844	0.8	5,767	26.4
	학교재정지원관리	803,945	25.7	672,149	23.6	131,796	19.6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89,170	6.0	73,118	2.6	116,052	158.7
평생 직업 교육	소 계	8,567	0.3	8,477	0.3	90	1.1
	평생교육	5,523	0.2	4,471	0.2	1,052	23.5
	직업교육	3,044	0.1	4,006	0.1	△962	△24.0
교육 일반	소 계	99,535	3.2	116,367	4.1	△16,832	△14.5
	교육행정일반	27,318	0.9	27,530	1.0	△212	△0.8
	기관운영관리	25,264	0.8	24,159	0.8	1,105	4.6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7,453	1.2	34,538	1.2	2,915	8.4
	예비비 및 기타	9,500	0.3	30,140	1.1	△20,640	△68.5

□ 세출예산의 기관별 편성내역은

- 교육청 본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조 1,959억 6천만원 보다 4.6% 증가한 2조 2,970억 8천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73.4%를 차지하며
-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3억 8천만원 보다 11.4% 감소한 286억 8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 포항교육청을 비롯한 23개 지역교육청은 전년도 예산액 6,186억 8천만원 보다 30.1% 증가한 8,049억 1천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5.7%를 보이고 있음.

◆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130,668	100.0	2,847,026	100.0	283,642	10.0
본 청	2,297,080	73.4	2,195,964	77.1	101,116	4.6
직속기관	28,676	0.9	32,383	1.1	△3,707	△11.4
교육지원청	804,912	25.7	618,679	21.7	186,233	30.1
포항교육지원청	132,256	4.2	104,772	3.7	27,484	26.2
경주교육지원청	69,309	2.2	54,746	1.9	14,563	26.6
김천교육지원청	57,673	1.8	37,897	1.3	19,776	52.2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증감액	증감율
안동교육지원청	51,897	1.7	36,208	1.3	15,689	43.3
구미교육지원청	92,146	2.9	68,605	2.4	23,541	34.3
영주교육지원청	35,885	1.1	28,802	1.0	7,083	24.6
영천교육지원청	33,754	1.1	23,665	0.8	10,089	42.6
상주교육지원청	36,152	1.2	31,100	1.1	5,052	16.2
문경교육지원청	20,748	0.7	16,221	0.6	4,527	27.9
경산교육지원청	79,062	2.5	55,593	2.0	23,469	42.2
군위교육지원청	12,214	0.4	7,437	0.3	4,777	64.2
의성교육지원청	16,642	0.5	16,427	0.6	215	1.3
청송교육지원청	11,659	0.4	10,809	0.4	850	7.9
영양교육지원청	6,944	0.2	7,108	0.2	△164	△2.3
영덕교육지원청	27,081	0.9	19,188	0.7	7,893	41.1
청도교육지원청	16,468	0.5	13,203	0.5	3,265	24.7
고령교육지원청	10,305	0.3	11,451	0.4	△1,146	△10.0
성주교육지원청	15,831	0.5	12,840	0.5	2,991	23.3
칠곡교육지원청	32,507	1.0	23,312	0.8	9,195	39.4
예천교육지원청	11,833	0.4	11,490	0.4	343	3.0
봉화교육지원청	13,271	0.4	11,887	0.4	1,384	11.6
울진교육지원청	15,515	0.5	11,569	0.4	3,946	34.1
울릉교육지원청	5,760	0.2	4,349	0.2	1,411	32.4

6. 종합검토의견

가. 세입 예산

- 내년도 세계경제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대의 성장률이 전망되나, 금융위기 이후 일부 유럽의 국가부도사태 등의 위기로 인하여 경제전망이 불확실성의 확대에 인하여 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5% 내의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지원금이 일정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11. 6월) ◆

구 분	2009실적	2010실적	2010전망	2012전망
세계경제	△0.5%	5.1%	4.3%	4.5%
우리나라	0.2%	6.1%	4.5%	4.2%

- 경북교육재정의 여건은 의존재원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일정부분 교부금이 상승할 것이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저소득층 수업료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교육청의 세입 중 이전수입 금액은 총 2조 9,80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5% 증가하였으며, 이전수입의 비율은 전체예산대비 94.9%로 전년도에 비하여 2.1% 감소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이월금 확대에 기인한 것임.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매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¹³⁾에 의해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므로, 경북교육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발굴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교부금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년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과 관련하여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교육청과 시·도가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50%씩 균분하는 것을 의무화해 개발지역에서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타시도(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경우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금년에 합의한 바가 있음.
-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2010년 말 현재 417억 9천 7백만원이 전입되지 않고 있어 부담금의 전입율은 전국 최하위인 1.8%에 머물러 있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개정 2008. 2. 29〉

◆ 전국 시·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2010. 12월말 현재)

시 도	대상 학교수	자치단체 전입금				부담률 순위	비고
		법정부담액	실제부담액	부담률	미전입액		
서 울	42	424,662	385,036	90.7%	39,626	1	
강 원	10	23,740	14,262	60.1%	9,478	2	
울 산	14	42,726	21,933	51.3%	20,793	3	
제 주	6	18,340	9,411	51.3%	8,929	4	
충 남	30	91,525	46,315	50.6%	45,210	5	
경 기	481	2,444,359	1,072,456	43.9%	1,371,903	6	
인 천	56	216,875	81,577	37.6%	135,298	7	
부 산	26	121,431	45,649	37.6%	75,782	8	
경 남	82	218,860	65,596	30.0%	153,264	9	
대 전	28	92,162	26,315	28.6%	65,847	10	
대 구	34	144,050	39,825	27.7%	104,225	11	
전 남	15	36,683	6,681	18.2%	30,002	12	
충 북	33	80,737	13,219	16.4%	67,518	13	
광 주	73	161,981	18,268	11.3%	143,713	14	
전 북	31	56,046	4,696	8.4%	51,350	15	
경 북	23	42,717	920	1.8%	41,797	16	
계	984	4,216,894	1,852,159	43.8%	2,364,735		

-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4천만원(9.6%)이 증가한 451억 2천만원인데 이는 전체 예산의 1.4%에 해당함.
- 전체예산 대비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자산수입이 6억 4천만원, 이자수입 2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자산수입은 대부분 폐교재산인 토지와 건물 매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자수입 증가는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이자 수입으로 판단됨.
- 기타수입인 전년도 이월금은 1,150억 5천만원으로 2010년도 435억 5천만원에 비해 7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164.7%나 증가한 금액임.
- 이월금은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며 2011 회계연도가 종료되어야 그 금액이 정확해질 것이나, 현재 산출된 순세계잉여금은 예년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하였다고 보여지며 지방교육의 건전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견지하고 교육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등 비효율적 재정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월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효율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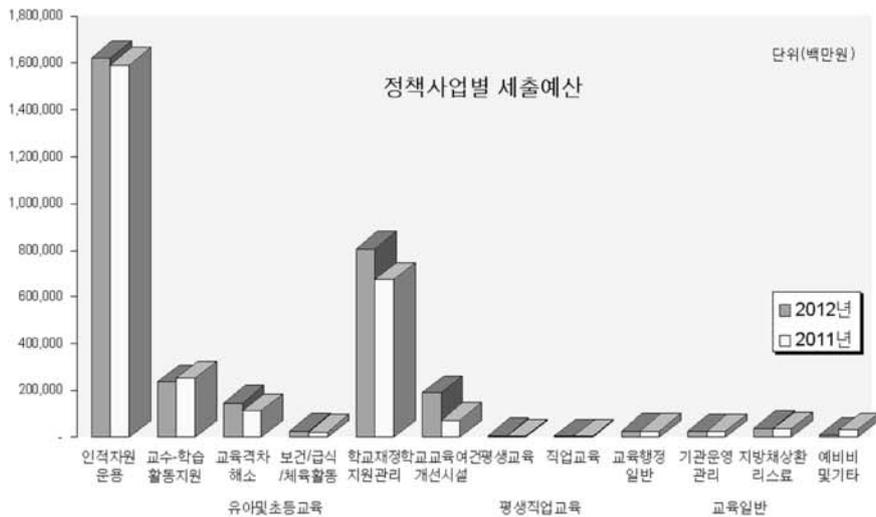
◆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액	최종금액	비 고
2010년	48,484	189,805	
2011년	43,554	146,323	
2012년	115,052	-	

나. 세출 예산

- 세출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총 2,836억 4천만원(10.0%)이 증액된 3조 1,306억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가시책사업, 「2011~2014 명품교육」 계획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지속적 추진, 공교육 활성화, 교육여건 개선 지원 등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 경북도 교육청의 세출예산은 의존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학교신설, 각종 운영비 및 인건비 증가에 따라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학교신설 및 증개축 등 시설사업에 많이 투자되고, 국가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가용 재원의 부족으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대책 강구
 -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법인전입금¹⁴⁾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사립학교의 중요한 세입이나 도내 사립학교의 2010년도 법정부담금 납입 내역을 보면 203억 2천만원 중 31억 1천만원만 납부되고 172억 2천만원이 미납되었음.
 -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 등 재정구조가 취약한 데다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기본적 의무인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사학 재단으로 인해 매년 도교육청에서 해당 사립학교로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열악한 교육재정에 더 큰 부담을 안기고 있으므로
 - 교육청에서 대책으로 제시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 유도 및 수익용 재산 누락이 없도록 법인의 재산관리 및 법인의 예결산 심사 철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사립학교도 있겠지만 광주시 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시설사업 대응투자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되 그 피해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 2012년 신규사업으로 누리과정 운영에 498억 7천만원의

14)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누리과정은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 실현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만 5세 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모든 유아에 대하여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 지난 9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여 '5세 누리과정'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누리과정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실시하게 될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사 연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차원에서 미리 대처하고 예산지원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또한 누리과정 실시 등 신규사업¹⁵⁾으로 인하여 교육복지 투자지원, 학비지원, 학력격차해소 사업 등이 감액 편성¹⁶⁾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하여야 할 것임.
- 주 5일제 실시 관련 방과후 학교 운영 철저
-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은 사교육비 부담완화 및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주5일제 수업 실시와 함께 80억 9천만원이 늘어난 461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15) 2012년 신규사업 현황(1억원 이상) - 참고자료 1

16) 30% 이상 감액 사업(단위사업별) - 참고자료 2

- 그러나 동 사업은 일부학교에서 교과부의 학교별 차등 성과급제로 인한 반강제적 참여, 국영수 위주의 강제보충 수업으로 변질, 민간위탁시 각종 비리 연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2012년도부터 주 5일수업제 자율실시¹⁷⁾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학습의 장이 학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기 때문에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여러 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방과 후 학교 사업은 566억 7천만원 계획에 대비하여 106억원이 부족하므로 예산확보에 유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시설 사업의 집행 추진 철저
- 사립학교 시설비지원, 학교신설, 증개축, 다목적시설, 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등 각종 학교의 시설사업에 2,042억

17) 초·중·고등학교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2천만원(사립학교 28.1%, 공립학교 158.7% 증가)이
계상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만성적으로 시설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이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
 -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의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수용의 예측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시설 투자를 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속적으로 학교시설에 투자를 하여 시설관리를
하여야 하나, 최근 복지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할 경우 학교시설 관리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의 균형배분에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임.
- 외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 외국어 교육사업은 영어 체험캠프 운영지원에 73.4%,
외국어 교원연수 47.1%, 영어교육활성화 11.6%가 감액
되었으며, 외국어 학습원운영 106.2%,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운영 4.5%가 증액되어 총 11억 6천만원(3.4%)이
감액된 327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음.

- 외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금년에 필요한 예산은 총 494억 8천만원으로 총 167억 3천만원이 부족하며, 이는 5세 누리과정 운영 등 신규로 시작되는 국가 시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염두하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면 원어민보조교사 학교배치율, 1인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우수강사인 1⁺등급, 1등급의 교사의 비율은 11.7%로 낮은 수준¹⁸⁾이므로 강사의 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우수강사 모집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임.

18) 원어민보조교사 배치현황

순위	원어민보조교사 학교 배치율		원어민보조교사 1인당 학생수		1 ⁺ , 1등급 교사 비율	
1	제주	100.0%	충남	501명	경남	41.6%
2	대구	99.3%	강원	506명	광주	40.0%
3	서울	95.4%	경북	538명	전남	33.2%
4	충남	93.2%	제주	552명	전북	30.2%
5	경북	92.7%	전남	607명	부산	27.7%
6	대전	90.3%	대구	647명	경기	25.5%
7	강원	89.4%	부산	724명	제주	24.7%
8	부산	87.4%	서울	760명	강원	24.1%
9	광주	87.3%	충북	785명	서울	17.0%
10	경기	87.0%	경기	836명	충남	16.9%
11	전남	80.8%	울산	911명	인천	16.6%
12	울산	80.2%	대전	954명	충북	16.0%
13	충북	78.3%	전북	964명	대전	15.1%
14	인천	73.0%	인천	1,046명	대구	14.5%
15	전북	69.2%	경남	1,089명	울산	13.9%
16	경남	65.8%	광주	1,362명	경북	11.7%

- 급식지원사업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 급식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전년대비 67억 6천만원(18.6%)이 증액된 431억 4천만원으로 학기중 중식지원, 학기중 토·공휴일급식비지원, 농산어촌 학생급식비지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 이 중에서 농산어촌 학생급식비 지원은 면지역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와 1대 1의 비율로 지원¹⁹⁾ 되므로 사업이 실시될 경우 각 지자체를 통한 지원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무상급식 실시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이나 향후 무상급식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 경북도 교육청의 재정 압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도 및 지자체와의 재정지원 규모 및 재원마련 방안 등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에 해당하는 2,836억 4천만원이 증액된 3조 1,306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도교육청의 예산은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상 의존재원이 많고 자체재원이 적은 구조로 투자가용 재원이 부족해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19) 2012년 면지역 초·중 급식비지원 추가 소요액 내역(시군별) - 참고자료 3

- 그러나 금년 예산 편성시에는 매년 지적사항이 되고 있었던 인건비의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변경, 세부사업 내역 없이 총액 편성하는 재량사업비 폐지 등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이고 있음.
- 세입부문에서는 교부금 확보 및 자체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부문에서는 교육 복지 사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세출구조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청 이전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조정과 예산절감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임.

7.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조서별첨)

10.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 고 자 료

1. 2012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현황(1억원 이상)
2. 30% 이상 감액 사업(단위사업별)
3. 2012년 면지역 초·중 급식비지원 추가 소요액
내역(시군별)

- 2012년도 본예산 산 신규사업 현황(1억원 이상) -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편성액	목적	사업방침, 기준	사업지 (학교 등)	세부사업명	예산서 페이지
교육정책과	토요방과후 학교운영	97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희망 학교 운영 학급당 연 50만원 지원 	초(1,012학급) 중(684학급) 고등학교(250학급)	방과후학교운영	p1,008
교육과정과	특수학교토요교실 운영지원	123,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일제 수업계실시에 따른 장애학생 토요 돌봄교실 및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당운영비, 돌봄교실, 보조인력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 7교	특수학교(급) 방과후교육지원	p685
교육과정과	독서논술경시대회 (토론교육활성화)	909,6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창의력 및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인성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형토론대회, 1교 1토론동아리운영, 단체격, 학교급별 연수, 토론길다잡이개발 	학교, 지역청, 도단위	독서논술교육지도	p722
교육과정과	독서교육특색 프로그램운영	222,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독서능력신장 및 자아개발, 체험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일제외연계한 독서문화 체험활동, 우리고장관련 도서읽기 등 	지역청	독서논술교육지도	p727
교육과정과	NIE활용학교운영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IE활용프로그램 현장지원을 통하여 신문활용교육의 교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IE프로그램 보급 	초, 중, 고등학교	독서논술교육지도	p730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편성액	목적	사업방침, 기준	사업지 (학교 등)	세부사업명	예산서 페이지
교육과정과	창의인성우수학교 지원	1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인성교육을 절하는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창의인성교육을 본격적으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학교 18교 선정, 교당 10,000천원 지원 	초, 중, 고등학교	교실수업개선	p432
교육과정과	중입배정관리 시스템구축	135,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나이스시스템에서 원서접수와 배정처리를 One-Stop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입배정 차세대나이스프로그램 개발 	본청	중학교진학관리	p1,232
과학직업 교육과	실습실현대화사업	613,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적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직업교육 활성화로 전문기능, 기술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직업교육과-10176(2011. 6. 14.) 실습실현대화추진계획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45교	특성화고기자재확충	p863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체제개편	6,0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고 정예화로 취업중심 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 일반고로 전환하는 중학교 및 거점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직업교육과-15664(2011. 8. 29)'11~14년도 특성화고 체제개편 추진계획 내부결재(교육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고 전환교 지원 : 영덕고 외3교 거점특성화고 지원 : 안동공고 교육청지원형특성화고 지원 : 한국산업과학고 (춘양상고) 외4교 정부부처지원형 특성화고지원 : 흥해공고 외1교 	특성화고개편 및 지원	p859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편성액	목적	사업방침, 기준	사업지 (학교 등)	세부사업명	예산서 페이지
체육건강과	농산어촌학생 급식비지원	2,799,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급식비부담경감 및 학생교육복지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지역 초, 중학교 	초 41교, 중 139교	학생증식비지원	p1,348
재무정보과	만 5세학비지원	49,639,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5세 유아에 대하여 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립유치원 : 학비 59천원, 종일반비 50천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 학비 200천원, 종일반비 70천원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운영	
재무정보과	유아학비지원 시스템운영	1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누리과정운영	
교육시설과	LED조명교체	2,26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절약 효과 제고 및 학습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원기준 :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우선 지원 	공립고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	p1,781

◆ 30% 이상 감액 사업(단위사업별) ◆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2012년)	2012년예산	전년예산	증 감	증감율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10,275,000	9,240,153	24,107,372	△14,867,219	△61.7
	유아교육진흥	36,590,000	20,768,528	37,287,612	△16,519,084	△44.3
	ICT활용교육	4,446,000	3,198,085	5,773,269	△2,575,184	△44.6
	학교평가관리	2,453,000	2,251,823	6,371,404	△4,119,581	△64.7
	교과서무상지원	8,216,000	7,590,484	11,974,292	△4,383,808	△36.6
교육복지지원	학비지원	37,287,000	32,493,012	43,659,194	△11,166,182	△25.6
	학력격차해소	3,368,000	3,111,223	6,802,389	△3,691,166	△54.3
	교육복지투자지원	16,694,000	9,037,000	16,624,695	△7587695	△45.6

◆ 2012년 면지역 초·중 급식비지원 추가 소요액 내역(시군별) ◆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예산부담별	
	예산액	학생수	예산액	학생수	예산액	학생수	교육청	지자체
계	5,598,396	13,710	2,998,296	7,932	2,600,100	5,778	2,799,198	2,799,198
포함	757,116	1,850	395,766	1,047	361,350	803	378,558	378,558
경주	1,023,678	2,555	661,878	1,751	361,800	804	511,839	511,839
김천	96,516	230	36,666	97	59,850	133	48,258	48,258
안동	90,450	201	0	0	90,450	201	45,225	45,225
구미	217,008	528	108,108	286	108,900	242	108,504	108,504
영주	22,050	49	0	0	22,050	49	11,025	11,025
영천	169,542	411	80,892	214	88,650	197	84,771	84,771
상주	192,618	449	49,518	131	143,100	318	96,309	96,309
문경	20,250	45	0	0	20,250	45	10,125	10,125
경산	501,048	1,248	317,898	841	183,150	407	250,524	250,524
군위	52,200	116	0	0	52,200	116	26,100	26,100
의성	275,184	656	105,084	278	170,100	378	137,592	137,592
청송	178,236	430	80,136	212	98,100	218	89,118	89,118
영양	11,250	25	0	0	11,250	25	5,625	5,625
영덕	347,346	841	163,296	432	184,050	409	173,673	173,673
청도	115,776	276	44,226	117	71,550	159	57,888	57,888
고령	239,040	592	143,640	380	95,400	212	119,520	119,520
성주	134,334	319	48,384	128	85,950	191	67,167	67,167
칠곡	342,684	898	322,434	853	20,250	45	171,342	171,342
예천	115,866	269	27,216	72	88,650	197	57,933	57,933
봉화	131,454	323	72,954	193	58,500	130	65,727	65,727
울진	564,750	1,399	340,200	900	224,550	499	282,375	282,375
울릉								

※ 추가소요액 없는 초등은 소규모학교로 지원 울릉은 초등 및 중등 모두 소규모학교로 지원

201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지사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1. 29,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11. 12. 13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12. 13 : 상정·질의·토론)
-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12. 14 : 상정·토론·의결)

3.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4. 예산편성 방향

-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 정리 차원의 예산편성

- 제1회 추경이후 변경된 사항 정리 및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
- 세외수입 등 편성누락분과 초과징수 예상액 반영
-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총액인건비 관련 경비 정리
- 연말까지 미집행분과 자체 예산 절감분 감액 조정
- 확정 및 추가내시에 따른 중앙지원금 및 도비 부담분 반영
- 기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현안경비 반영

5. 예 산(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021,277	100.0	5,791,119	100.0	230,158	4.0
일 반 회 계	5,200,287	86.4	4,980,475	86.0	219,812	4.4
특 별 회 계	820,990	13.6	810,644	14.0	10,346	1.3
의료급여기금운영	398,899	6.6	395,623	6.8	3,276	0.8
치 수 사 업	26,641	0.4	24,456	0.4	2,185	8.9
경북도립대학운영	8,219	0.1	8,760	0.2	△541	△6.2
광역교통시설	1,793	0.0	1,793	0.0	0	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1,067	0.8	45,300	0.8	5,767	12.7
학교용지부담금	971	0.0	1,312	0.0	△341	△26.0
지역개발기금운영	333,400	5.5	333,400	5.8	0	0.0

2) 총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021,277	100.0	5,791,119	100.0	230,158	4.0
자 체 수 입	1,701,866	28.3	1,595,741	27.6	106,125	6.7
지방세 수입	1,130,000	18.8	1,025,000	17.7	105,000	10.2
세 외 수 입	571,866	9.5	570,741	9.9	1,125	0.2
경상적수입	64,285	1.1	63,272	1.1	1,013	1.6
임시적수입	507,582	8.4	507,470	8.8	112	0.0
의 존 수 입	4,319,410	71.7	3,980,378	68.7	339,032	8.5
지방교부세	961,804	16.0	948,934	16.4	12,871	1.4
보 조 금	3,094,006	51.4	3,031,444	52.4	62,562	2.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63,600	4.4	215,000	3.7	48,600	22.6

3) 총괄 세출예산

가) 기능별(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021,277	100.0	5,791,119	100.0	230,158	4.0
일 반 공 공 행 정	1,113,506	18.5	988,348	17.1	125,157	12.7
공공질서 및 안전	283,686	4.7	274,192	4.7	9,493	3.5
교 육	7,259	0.1	7,420	0.1	△161	△2.2
문화 및 관광	337,931	5.6	335,286	5.8	2,645	0.8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환 경 보 호	518,136	8.6	526,401	9.1	△8,266	△1.6
사 회 복 지	1,584,227	26.3	1,569,071	27.1	15,156	1.0
보 건	70,770	1.2	71,024	1.2	△254	△0.4
농 립해양수산	956,250	15.9	920,087	15.9	36,163	3.9
산업중소기업	185,779	3.1	156,279	2.7	29,501	18.9
수송 및 교통	314,782	5.2	314,285	5.4	497	0.2
국토 및 지역개발	258,691	4.3	252,686	4.4	6,005	2.4
과 학 기 술	18,061	0.3	15,379	0.3	2,682	17.4
예 비 비	60,353	1.0	40,070	0.7	20,283	50.6
기 타	311,847	5.2	320,591	5.5	△8,744	△2.7

나) 조직별(총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021,277	100.0	5,791,119	100.0	230,158	4.0
의 회 사 무 처	12,189	0.2	12,811	0.2	△623	△4.9
공 보 관	2,515	0.0	2,600	0.0	△85	△3.3
미래전략기획단	1,421	0.0	1,451	0.0	△30	△2.1
도청이전추진본부	50,076	0.8	46,105	0.8	3,971	8.6
환경특별관리단	10,767	0.2	16,887	0.3	△6,120	△36.2
기 획 조 정 실	766,144	12.7	682,165	11.8	83,979	12.3
일자리경제본부	187,388	3.1	167,148	2.9	20,240	12.1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공 무 원 교 육 원	5,034	0.1	5,096	0.1	△62	△1.2
감 사 관 실	413	0.0	413	0.0	0	0.0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623,462	27.0	1,608,468	27.8	14,994	0.9
행 정 지 원 국	505,796	8.4	448,197	7.7	57,599	12.9
환 경 해 양 산 립 국	728,749	12.1	730,692	12.6	△1,943	△0.3
보 건 환 경 연 구 원	8,635	0.1	9,117	0.2	△483	△5.3
농 수 산 국	719,820	12.0	688,197	11.9	31,623	4.6
농 업 기 술 원	56,760	0.9	55,854	1.0	906	1.6
투 자 유 치 분 부	74,944	1.2	60,866	1.1	14,078	23.1
문 화 관 광 체 육 국	334,019	5.6	331,407	5.7	2,612	0.8
건 설 도 시 방 재 국	733,199	12.2	718,882	12.4	14,317	2.0
낙 동 강 살 리 기 사 업 단	5,483	0.1	5,406	0.1	77	1.4
소 방 분 부	186,246	3.1	190,596	3.3	△4,350	△2.3
경 북 도 립 대 학	8,219	0.1	8,760	0.2	△541	△6.2

다) 성질별(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021,277	100.0	5,791,119	100.0	230,158	4.0
인 건 비	243,874	4.1	247,913	4.3	△4,039	△1.6
물 건 비	131,178	2.2	135,454	2.3	△4,276	△3.2
경 상 이 전	2,359,029	39.2	2,245,596	38.8	113,433	5.1
자 본 지 출	2,411,844	40.1	2,383,047	41.2	28,797	1.2
용 자 및 출 자	242,000	4.0	237,000	4.1	5,000	2.1
보 전 재 원	153,251	2.6	153,251	2.7	0	0.0
내 부 거 래	405,064	6.7	341,642	5.9	63,422	18.6
예 비 비 및 기 타	75,037	1.3	47,216	0.8	27,821	58.9

나. 일반회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200,287	100.0	4,980,475	100.0	219,812	4.4
지방세 수입	1,130,000	21.7	1,025,000	20.6	105,000	10.2
세 외 수 입	225,078	4.3	234,299	4.7	△9,221	△3.9
경 상 적 수 입	26,534	0.5	26,037	0.5	497	1.9
임 시 적 수 입	198,544	3.8	208,262	4.2	△9,718	△4.7
지방교부세	961,804	18.5	948,934	19.1	12,871	1.4
보 조 금	2,769,805	53.3	2,707,243	54.4	62,562	2.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13,600	2.2	65,000	1.3	48,600	74.8

2)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200,287	100.0	4,980,475	100.0	219,812	4.4
일반공공행정	780,123	15.0	654,966	13.2	125,157	19.1
공공질서 및 안전	283,686	5.5	274,192	5.5	9,493	3.5
교육	2,785	0.1	2,785	0.1	0	0.0
문화 및 관광	337,931	6.5	335,286	6.7	2,645	0.8
환경 보호	518,136	10.0	526,401	10.6	△8,266	△1.6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사 회 복 지	1,185,328	22.8	1,173,448	23.6	11,880	1.0
보 건	70,770	1.4	71,024	1.4	△254	△0.4
농 립 해 양 수 산	956,250	18.4	920,087	18.5	36,163	3.9
산 업 중 소 기 업	134,712	2.6	110,979	2.2	23,734	21.4
수 송 및 교 통	312,989	6.0	312,492	6.3	497	0.2
국 토 및 지 역 개 발	231,079	4.4	226,918	4.6	4,161	1.8
과 학 기 술	18,061	0.4	15,379	0.3	2,682	17.4
예 비 비	60,353	1.2	40,070	0.8	20,283	50.6
기 타	308,085	5.9	316,449	6.4	△8,364	△2.6

나) 조직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200,287	100.0	4,980,475	100.0	219,812	4.4
의 회 사 무 처	12,189	0.2	12,811	0.3	△623	△4.9
공 보 관	2,515	0.1	2,600	0.1	△85	△3.3
미 래 전 략 기 획 단	1,421	0.0	1,451	0.0	△30	△2.1
도 청 이 전 추 진 본 부	50,076	1.0	46,105	0.9	3,971	8.6
환 경 특 별 관 리 단	10,767	0.2	16,887	0.3	△6,120	△36.2
기 획 조 정 실	432,744	8.3	348,765	7.0	83,979	24.1
일 자 리 경 제 본 부	136,321	2.6	121,848	2.5	14,473	11.9
공 무 원 교 육 원	5,034	0.1	5,096	0.1	△62	△1.2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감 사 관 실	413	0.0	413	0.0	0	0.0
보건복지여성국	1,224,563	23.6	1,212,845	24.4	11,718	1.0
행 정 지 원 국	505,796	9.7	448,197	9.0	57,599	12.9
환경해양산림국	728,749	14.0	730,692	14.7	△1,943	△0.3
보건환경연구원	8,635	0.2	9,117	0.2	△483	△5.3
농 수 산 국	719,820	13.8	688,197	13.8	31,623	4.6
농 업 기 술 원	56,760	1.1	55,854	1.1	906	1.6
투자유치본부	74,944	1.4	60,866	1.2	14,078	23.1
문화관광체육국	334,019	6.4	331,407	6.7	2,612	0.8
건설도시방재국	703,794	13.5	691,321	13.9	12,473	1.8
낙동강살리기사업단	5,483	0.1	5,406	0.1	77	1.4
소 방 본 부	186,246	3.6	190,596	3.8	△4,350	△2.3

다)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200,287	100.0	4,980,475	100.0	219,812	4.4
인 건 비	240,796	4.6	244,591	4.9	△3,795	△1.6
물 건 비	126,081	2.4	130,527	2.6	△4,446	△3.4
경 상 이 전	1,920,339	36.9	1,810,092	36.3	110,248	6.1
자 본 지 출	2,360,160	45.4	2,336,583	46.9	23,578	1.0
융 자 및 출 자	63,000	1.2	58,000	1.2	5,000	8.6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보 전 재 원	20,230	0.4	20,230	0.4	0	0.0
내 부 거 래	404,123	7.8	340,381	6.8	63,742	18.7
예비비 및 기타	65,557	1.3	40,070	0.8	25,487	63.6

다. 특별회계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820,990	100.0	810,644	100.0	10,346	1.3
의료급여기금운영	398,899	48.6	395,623	48.8	3,276	0.8
치 수 사 업	26,641	3.2	24,456	3.0	2,185	8.9
경북도립대학운영	8,219	1.0	8,760	1.1	△541	△6.2
광역교통시설	1,793	0.2	1,793	0.2	0	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1,067	6.2	45,300	5.6	5,767	12.7
지역개발기금운영	333,400	40.6	333,400	41.1	0	0.0

2)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820,990	100.0	810,644	100.0	10,346	1.3
세 외 수 입	346,789	46.5	336,442	41.5	10,346	3.1
경상적 수입	37,750	4.6	37,235	4.6	515	1.4
임시적 수입	309,038	37.6	299,208	36.9	9,831	3.3
보 조 금	324,201	39.5	324,201	40.0	0	0.0
지 방 채 및 수 예 치 금 회 수	150,000	18.3	150,000	18.5	0	0.0

3) 특별회계 세출예산

가) 기능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820,990	100.0	810,644	100.0	10,346	1.3
일반공공행정	333,383	40.6	333,383	41.1	0	0.0
교육	4,475	0.6	4,635	0.6	△161	△3.5
사회복지	398,899	48.6	395,623	48.8	3,276	0.8
산업중소기업	51,067	6.2	45,300	5.6	5,767	12.7
수송 및 교통	1,793	0.2	1,793	0.2	0	0.0
국토 및 지역개발	27,612	3.4	25,768	3.2	1,844	7.2
기 타	3,762	0.5	4,142	0.5	△380	△9.2

나) 조직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820,990	100.0	810,644	100.0	10,346	1.3
기획조정실	333,400	40.6	333,400	41.1	0	0.0
예산담당관실	333,400	40.6	333,400	41.1	0	0.0
일자리경제본부	51,067	6.2	45,300	5.6	5,767	12.7
에너지정책과	51,067	6.2	45,300	5.6	5,767	12.7
보건복지여성국	398,899	48.6	395,623	48.8	3,276	0.8
사회복지과	398,899	48.6	395,623	48.8	3,276	0.8
건설도시방재국	29,405	3.6	27,561	3.4	1,844	6.7
균형개발과	1,793	0.2	1,793	0.2	0	0.0
건축지적과	971	0.1	1,312	0.2	△341	△26.0
치수방재과	26,641	3.2	24,456	3.0	2,185	8.9
경북도립대학	8,219	1.0	8,760	1.1	△541	△6.2

다) 성질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820,990	100.0	810,644	100.0	10,346	1.3
인 건 비	3,078	0.4	3,321	0.4	△244	△7.3
물 건 비	5,097	0.6	4,927	0.6	170	3.5
경 상 이 전	438,690	53.4	435,504	53.7	3,185	0.7
자 본 지 출	51,683	6.3	46,464	5.7	5,219	11.2
융 자 및 출 자	179,000	21.8	179,000	22.1	0	0.0
보 전 재 원	133,021	16.2	133,021	16.4	0	0.0
내 부 거 래	942	0.1	1,261	0.2	△319	△25.3
예비비 및 기타	9,480	1.2	7,146	0.9	2,335	32.7

라.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 사업은 총 62개 사업에 1,376억 95백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1개 사업에 1,375억 25백만원,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1억 70백만원임.

※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 참조

6. 검토의견

가. 총 괄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5조 7,911억원보다 2,302억원(4.0%)이 증액된 6조 213억원임.

-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9,805억원보다 2,198억원(4.4%)이 증액된 5조 2,0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06억원보다 103억원(1.3%)이 증액된 8,210억원임.

◆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0,213	100.0	57,911	100.0	2,302	4.0
일반회계	52,003	86.4	49,805	86.0	2,198	4.4
특별회계	8,210	13.6	8,106	14.0	103	1.3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 기정예산 4조 9,805억원보다 2,198억원(4.4%)이 증액된 5조 2,003억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역은

- 지방세 순증은 1,050억원으로 보통세 800억원, 목적세 250억원 등임.
- 세외수입은 9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월금 51억원, 전입금 70억원 등은 증액 계상되었지만 잉여금에서 322억원이 감액됨.

- 중앙지원금 순증은 75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29억원, 보조금 626억원이며, 주요 내역은 보육 돌봄 서비스 39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4억원, 생태 하천 복원 사업 41억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44억원,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222억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99억원 등임.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 내용으로는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부문 1,347억원,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부문 △56억원, 사회복지, 보건 부문 116억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362억원, 산업·중소기업, 과학 기술 부문 264억원,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47억원, 기타 부문 △84억원, 예비비 203억원임.

라) 성질별 편성 내용으로는

- 인건비 38억원 감액,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물건비 44억원 감액, 일반보상금, 출연금, 자치단체 이전 등 경상이전 1,102억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236억원 증액, 융자 및 출자금 50억원,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637억원 증액, 예비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55억원 증액하였음.

2) 특별회계

가) 총 규모는

- 기정예산 8,106억원보다 103억원(1.3%)이 증액된 8,210억원임.

나) 의료급여기금운영은

-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33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위탁에 증액 계상함.

다) 치수사업은

- 세입에서 폐천 부지 매각대 8억원, 순세계 잉여금 14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출에서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2억원 감액, 예비비는 23억원을 증액 계상함.

라) 경북도립대학운영은

-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및 전입금 등에서 5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에서 장학사업 추진 1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 4억원을 감액 계상함.

마)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는

- 세입에서 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53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출에서 지역개발사업 13억원, 테스트 베드 구축사업 지원사업에 41억원을 증액 계상함.

다. 종합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0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실물경기 회복세로 인해 당초 예상한 징수액 보다 많이 늘어난 규모이며,

-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22억원 감액 계상 등 자체수입 부분을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 사업 추가 및 변경 등에 조정된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129억원,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626억원이 증액되었음.
- 국비재원은 정리추경에서라도 많이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국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지방비 부담을 과중시키고 정리추경에서 국비를 감액 편성하는데 이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추계를 하지 않고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나) 세출예산

- 금번 정리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조정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기존사업 중 사업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여 당면 현안사업에 반영한 것으로 주로 道民의 실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
- 명시이월사업²⁰⁾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의 명시이월사업 추세를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규모인데, 2011년도는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20)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참고자료에 게재함.

◆ 최근 3년간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2	387	73	653	62	1,377	

- 참고자료에 게재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대부분 공기 부족,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시설 공사비이며, 자치단체부담금, 연구용역비 등도 9건 12억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사업 규모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해안 명승지 선현 발자취 찾기 사업의 경우 경북 정체성 포럼 운영의 개별사업으로 고문(古文) 번역 기간 부족을 이월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 소요사업 기간 판단 등 사전 추진 계획이 면밀히 검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한 것으로 보여지며, 경상적 경비를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전액 감액사업²¹⁾의 경우 2011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의 사업 가운데 계획취소, 중단 등으로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사업은 49건에 127억원으로,
- 그 중 10억원 이상 전액 감액한 주요사업은 새마을운동 테마 공원 조성(65억원 減), 매물지 정비 장비 임차료(10억원 減), 매물지 유지 관리 재료비(10억원 減) 등 3개 사업임.

21)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현황은 참고자료에 게재함.

- 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미흡, 예측하지 못한 민원발생, 사업추진 기피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사장(死藏)으로 인해 꼭 필요한 다른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여 재정운영에 곤란한 결과를 초래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새 마을 봉 사 과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	0	6,500	△6,500	△100.0	
환경특별관리단	매물지정비장비임차료	0	1,000	△1,000	△100.0	
"	매물지유지관리재료비	0	1,000	△1,000	△100.0	
녹 색 환 경 과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신도청)	0	500	△500	△100.0	
쌀산업FTA대책과	쌀플라자건립사업	0	650	△650	△100.0	
건 축 지 적 과	행정주제도DB 및 공간계획지원시스템구축	0	300	△300	△100.0	
소 방 본 부 방 호 구 조 과	농어촌119구급지원체계보강	0	900	△900	△100.0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재원은 시기가 연말인 점을 감안 적기에 지원되어 예산편성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특히, 2011회계연도가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임을 감안 年内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추진
으로 예산 낭비 및 사업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회계

- 道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금회 추경예산
에는 지역개발기금운영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5종 특별회계를 계상하였는데 대부분 전입금 또는
국고보조금 세입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 명시이월 사업조서
-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 현황

<자료 1>

명시이월사업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사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계				61건	265,621,085	137,525,300	
도정주요 전략기획 및 조정	도정주요 전략 및 기획	경북정체성포럼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	동해안 명승지 선현 발자취 찾기 사업	55,000	55,000	경북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기행문집 번역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기획조정 지원체계 강화	도정정책개발시스템 강화	도정정책개발및주요현안관리	207-01 연구용역비	경북 첨단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50,000	50,000	당초 해양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경북 동해안 전반에 대한 해양산업 발굴을 위한 용역으로 과업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용역기간이 10개월('11. 11 ~ '12. 9월)이상 장기간 소요로 이월
관광정책기획	관광기획	관광기획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	경북관광개발공사 감정 및 기업가치 수수료	450,000	159,050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지연으로 인한 각종 제반 경비 이월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어촌어항관광인프라 구축	지방어항건설	401-01 시설비	지방어항건설	3,812,500	650,000	삼정항 시설공사기간('11. 4 ~ '12. 3)이 1년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인한 이월
		지방어항환경영향평가	401-01 시설비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640,000	120,000	병곡항 외 5개 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1년간 소요됨으로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사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경마건설발육	경마장건설지원	경마장건설지원	403-01 시설비	경마공원건설 추가부지매입	30,000,000	30,000,000	영천경마공원 허가 지연에 따른 부지매입비 이월
내수자조생체운	내수자원개발협력	토속어류산업발전사업	401-01 시설비	토속어류산업화센터 부지매입	76,000	12,559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연내 부지매입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401-03 시설비	토속어류산업화센터 부지매입	2,000	2,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도시수환경구축	수산업자원	청사신축	401-01 시설비	청사신축	977,100	958,420	장기계속 공사로 동계공사 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401-02 감리비	청사신축	16,600	16,6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건강환경조성	공공수역수질관리	제7차 물포치	207-01 구역비	낙동강수생태 선상투어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	134,000	93,800	용역소요기간('11. 9. 15 ~ '12. 9. 13) 부족으로 선급금을 제외한 사업비 이월
동해안개발	해양관광자원개발시설효	2012여세계박람회	201-03 사업비	2012여세계박람회 지자체관운영	200,000	140,000	지자체관 운영계약이 '11년 11월에 체결되어년도내 사업준공이 어려워 이월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사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산림자원 연구개발 보존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사방사업	401-01 시설비	사방기술원조성사업	3,608,300	3,608,300	사방기술원조성 공사기간 ('11. 6 ~ '12. 6)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
			401-02 감리비	사방기술원조성사업	380,900	306,851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01-03 시설투자 부대비	사방기술원조성사업	10,800	10,8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401-01 시설비	7.7~16호우피해 (사방) 복구사업	973,149	973,149	복구사업에 필요한 사전 시설설계 및 설계심사 기간 소요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
			401-02 감리비	7.7~16호우피해 (사방) 복구사업	28,100	28,1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산림자원 연구개발 보존	산림자원 조성	산림경영 자원육성	401-01 시설비	7.7~16호우피해 (임도) 복구사업	32,900	32,900	복구사업에 필요한 사전 시설설계 및 설계심사 기간 소요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
산림경영 기관구축	산림자원 조성업무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2,454,000	2,454,000	휴양림조성공사 기간이 장기간(2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공기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
			401-02 감리비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37,000	37,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01-03 시설투자 부대비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9,000	4,297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사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강화	호국선양 사업추진	현충시설 및 호국 보훈시설 확충	401-01 시설비	경상북도보훈회관 건립설계용역	200,000	200,000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은, 도청이전 신도시내 회관건립 예정지 결정을 위 한 실시계획 승인 및 조성 토지 공급계획 결정이 2012 년 상반기중 완료 예정으로 있어 부득이 이월	
노인안전 및 보건 증진	노인의료 복지증진	공립치매 병원건립 및 장비 입입	402-01 민간자본 보조	도립치매병원증개축	1,500,000	550,000	증축에 따른 지구지정 변경 등 공사 지연으로 년도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이월	
지방 건 화	지방 도 설 화	지방 도 충 청 경 산 지 국 국 건	관 간 도 설	401-01 시설비	왜관~가산 도로건설공사	12,399,000	6,486,000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절 대공기(12. 6월 준공) 부족 으로 부득이 이월
			울 릉 일 주 도 로 건 설	401-01 시설비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8,673,136	4,183,800	보상지연으로 인한 절대공 기(12. 12월 준공) 부족 으로 부득이 이월
				401-02 감리비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	200,000	20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청 경 국 지 도 설	401-03 시설비	청도~경산간 도로 4차로 확장공사	2,563,000	1,700,000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12. 9)로 사업비 이월
			용 암 국 지 도 설	401-01 시설비	용암~선남간 도로 4차로 확장공사	8,975,000	1,395,000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
			화 서 국 지 도 설	401-01 시설비	화서~화북간도로 건설공사	11,604,000	881,764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사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방도 건설 확포장	지방도 확충	농산 양지 국건	401-01 시설비	농암~산양간도로 건설공사	4,525,000	3,009,000	보상지연으로 인한 절대공 기 부족으로 이월
			401-02 감리비	농암~산양간도로 건설공사	200,000	200,000	전면책임감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
			401-03 시설비 부대비	농암~산양간도로 건설공사	71,000	62,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지방 도 건	401-01 시설비	지방도건설	52,730,000	21,482,653	경마장 승인지연 및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
			401-03 시설비 부대비	지방도건설	170,000	94,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자연재해 복구능력 강화	친환경적 하천정비 추진	수해 습지 개선사업 (도시행)	401-01 시설비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설비	35,740,000	9,965,757	마천지구 외 15지구 공사 기간이 '11. 7 ~ '12. 7 까지로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401-03 시설비 부대비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84,000	100,434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고향의 강사업	401-01 시설비	고향의강사업시설비	3,416,000	2,712,000	길안천 고향의 강 사업 외 4지구의 사업 기간이 '11. 7. 12 ~ '12. 7까지로 절 대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
지방도 확충 및 유지관리	도로 통목 확충	사리 도 포장	401-01 시설비	사리도확포장사업 시설비	7,640,000	605,000	외서 ~ 농암간 및 북안 ~ 고경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 준 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지방도 유지관리	지방도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지방도유지관리시설 비	6,346,600	348,226	무을도로 선형개량공사 보 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이월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사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방 확충 유지관리	자 동 차 교 통 관 리 개 선	위 험 도 로 구 조 개 선	401-01 시 설 비	위험도로구조개선 시설비	1,789,000	530,000	대북도로 선형개량공사 사 업계획변경에 의한 절대 공기(11. 10 ~ 12. 10) 부족으로 이월
			401-03 시 설 비 부 대 비	위험도로구조개선 시설부대비	11,000	6,881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교 통 사 고 자 른 곳 개 선 사 업	401-01 시 설 비	교통사고자른곳개선 사업시설비	695,000	496,400	회전교차로사업 예산재배 정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으로 이월
			401-03 시 설 비 부 대 비	교통사고자른곳개선 사업시설부대비	5,000	3,6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도 교 통 확 충	사 리 도 확 포 장	401-01 시 설 비	사리도확포장	10,692,000	300,000	방전도로 확포장 등 3개 구간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이월 (방전도로, 산북~문경간, 옥산~풍천간도로)
			401-01 시 설 비 부 대 비	사리도확포장 시설부대비	64,000	35,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자 동 차 교 통 관 리 개 선	위 험 도 로 구 조 개 선	401-01 시 설 비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3,083,000	650,000	사업추진 중 보상협의 지연 으로 공사중지와 수용재 결신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청양도로 선형개량공사)
	교 량 안 전 관 리	교 량 및 터 널 개 보 수	401-01 시 설 비	교량개체	1,700,000	1,046,000	보상협의 지연 및 하절기 약천후(강우일 30일 이상) 등으로 공사중단 등으로 공 기부족에 따른 이월(망미 교, 부석교)
			401-03 시 설 비 부 대 비	교량 및 터널 개보수시설부대비	35,000	23,000	시설비 이월 따른 시설부 대비 이월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사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	낙동강 프로젝트 핵심사업 추진	낙동강 프로젝트 핵심사업 추진경비	307-05 민간 위탁금	낙동강살리기사업 일반공구 준공식	100,000	100,000	낙동강살리기사업 일반 공구 완공시기가 2012 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준공시기에 맞추어 이월
			308-05 자치 단체 부담금	낙동강연안광역계획 수립연구용역비부담	50,000	50,000	4개 광역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확보 지 연으로 부득이 이월
성공적인 도청이전 추진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지원	201-03 행사 운영비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건립기공식 행사	350,000	350,000	국회·도의회 개원과 동절 기로 인한 기공식행사 연 기로 부득이 이월
새로운 성장거점 신도시 조성	도청 신도시 기반조성	도청 및 도의회 신청 건	401-01 시설비	도청및도의회신청사 건립공사	24,950,000	22,290,710	신청사 실시설계 완료('11. 7) 및 건설기술심의 위원 회 개최('11. 9)를 통해 신청사 건립공사가 '11. 10월에 착공되어 공기부족 으로 이월
			401-03 시설비 부대비	도청및도의회신청사 건립공사시설부대비	50,000	5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신도시 진입도로 개	401-01 시설비	신도시진입도로 개설공사	3,990,000	3,990,000	타당성재조사 기간연장에 따른 국비배정지연 및 '12년 사업시행으로 설계비 이월
			401-03 시설비 부대비	신도시진입도로 개설공사시설부대비	10,000	1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사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조성	새마을 운동역량 강화	새마을 운동육성 지원	401-01 시설비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7,225,000	7,225,000	예비타당성조사 및 테마공 원기본계획수립 등 행정절 차가 11년말 완료예정으 로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401-02 감리비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 감리비	261,000	261,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01-03 시설비 부대비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시설부대비	14,000	14,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지역특화 작목육성 개발	고령지 약초연구 기반조성	지역연구 기반조성	401-01 시설비	고령지 약초시험장 이전신축	9,347,729	6,092,978	이전 부지 매입 지연과 실 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 행에 따른 시험장 이전 공 기부족으로 공사비 이월
			401-02 감리비	고령지 약초시험장 이전신축 감리비	98,238	98,238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01-03 시설비 부대비	고령지 약초시험장 이전신축 시설부대 비	17,033	14,033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사 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계				1건	170,000	170,000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에너지 육성 및 지원사업	에너지 산업육성 및 지원추진	207-01 연 구 용 역 비	정부 민자원전 타당성 연구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	170,000	170,000	정부의 『원전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간참여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11. 5. ~ '12. 4.)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연구용역 기간('11. 12 ~ '12. 7)을 감안 이월

<자료 2>

◆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공보관실	지역언론중사자네트워크강화	0	50	△50	△100.0	
"	홍보담당공무원위크숍	0	15	△15	△100.0	
"	도정주요전략프로젝트사업장현장탐방	0	20	△20	△100.0	
미래전략기획단	경북형ODA(공적개발원조)포럼개최 및 운영	0	30	△30	△100.0	
정책기획관	도및시군의회업무담당공무원위크숍	0	10	△10	△100.0	
"	도및시군기획평가업무담당자위크숍	0	10	△10	△100.0	
"	성과관리담당자교육	0	20	△20	△100.0	
예산담당관	예산업무추진시군공무원연찬회개최	0	15	△15	△100.0	
신성장산업과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조성	0	156	△156	△100.0	
투자유치단	IK홈페이지유지관리비	0	10	△10	△100.0	
자치행정과	도정모니터간담회참석차실비보강	0	13	△13	△100.0	
"	시도친선체육대회참가선수단유니폼	0	15	△15	△100.0	
인재양성과	경상북도평생교육기관단체관계자위크숍	0	10	△10	△100.0	
"	도민교육상해보상비	0	20	△20	△100.0	
새마을봉사과	시설장비유지비	0	10	△10	△100.0	
"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	0	6,500	△6,500	△100.0	
회계계약심사과	강당보수	0	150	△150	△100.0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연찬회개최	0	15	△15	△100.0	
공무원교육원	시군담당공무원교육고정개발위크숍	0	15	△15	△100.0	
환경특별관리단	구제역매물지관리일시사역인부임	0	67	△67	△100.0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환경특별관리단	구제역매몰지사후정비차수자재구입	0	88	△88	△100.0	
"	매몰지정비장비임차료	0	1,000	△1,000	△100.0	1
"	매몰지유지관리재료비	0	1,000	△1,000	△100.0	
문화예술과	2011경주국제아트페어	0	60	△60	△100.0	
"	민속공예품물마당운영	0	15	△15	△100.0	
"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운영비지원	0	24	△24	△100.0	
관광진흥과	무흘구곡(한강대)관광자원개발	0	100	△100	△100.0	
"	시도관광국장위크숍개최지원	0	10	△10	△100.0	
체육진흥과	영천전지훈련생활관건립	0	200	△200	△100.0	
녹색환경과	환경해양산림정책개발위크숍	0	10	△10	△100.0	
"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신도청)	0	500	△500	△100.0	
"	경산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	0	192	△192	△100.0	
물산업과	상하수도공무원업무연찬회	0	10	△10	△100.0	
"	포항소화조효율개선	0	221	△221	△100.0	
산림복지과	산림경영선진화위크숍	0	15	△15	△100.0	
산림비즈니스과	산림비즈니스정책발전세미나	0	20	△20	△100.0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분야국제행사참석및기술연수	0	10	△10	△100.0	
쌀산업FTA대책과	쌀플라자건립사업	0	650	△650	△100.0	
식품유통과	학교급식우수농수산물공급확대시범사업	0	57	△57	△100.0	
경마장건설지원단	토지보상주민설명회	0	20	△20	△100.0	
축산기술연구소	돼지인공수정센터물품구입	0	21	△21	△100.0	
어업기술센터	자율관리어업발전포럼개최	0	20	△20	△100.0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녹색경북부자농촌만들기다짐대회	0	30	△30	△100.0	
균형개발과	신공항홍보행사	0	20	△20	△100.0	
건축지적과	행정주제도DB및공간계획지원시스템구축	0	300	△300	△100.0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열차단펄름설치공사	0	13	△13	△100.0	
낙동상사업지원팀	낙동간사업관계자워크숍	0	15	△15	△100.0	
총괄지원과	도청이전지역어울림한마당	0	30	△30	△100.0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농어촌119구급지원체계보강	0	900	△900	△100.0	

※ 기정예산 1천만원 이상만 작성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8.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내역 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조서

◇ 세입부문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증 액	비고
계			55,720	
96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5,720	

◇ 세출부문

[삭감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순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감 액	비고
1	165	행정지원국	연가보상비	△23,880	

[증액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증 액	비고
계			79,600	
107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아가족양육지원	79,600	

2011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1. 소관부서 : 경상북도교육감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29. 경상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1. 12.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 12. 14 : 상정·질의·토론·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정오용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4.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총규모

-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에 해당하는 1,659억 3천만원이 증액된 3조 2,185억 7천만원으로 편성됨.

◆ 예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A - B	증감률(%)
세입·세출	3,218,574	3,052,649	165,925	5.4

나.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59억 3천만원이 증액된 3조 2,185억 7천만원으로
 - 이전수입은
 - 기정예산 2조 8,655억 2천만원 보다 1,513억원(5.3%)이 증액된 3조 167억 1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3.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보통교부금 138억 1천만원, 특별교부금으로 2011시도교육청평가시상금 130억 1천만원 등 116건 678억 6천만원,

국고보조금은 정부초청 해외영어 봉사장학생 사업지원금 14억 7천만원 등 4건 58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서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364억 6천만원, 시도세전입금 68억 3천만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9억 4천만원, 비법정이전수입인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38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기타 이전수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지원금 9억 3천만원 등 41건 55억 9천만원이 증액되고 교사수업 전문성신장에 1천만원이 감액되어 55억 8천만원임

○ 자체수입은

- 총 555억 4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7%를 차지하고, 기정예산 422억 4천만원보다 133억원(31.5%)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인 행정활동수입에서 2천만원, 자산임대 및 자산매각대인 자산수입 92억 7천만원, 이자수입 30억 7천만원, 잡수입 9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수-학습활동수입에서 3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기타수입은

-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5%를 차지하며 14억 3천만원이 증액(1.0%)되어 1,463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음.

◆ 세입예산 자원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장 관 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218,574	100.0	3,052,649	100.0	165,925	5.4	
이전수입	소 계	3,016,713	93.7	2,865,516	93.9	151,198	5.3
	중앙정부 이전수입	2,716,945	84.4	2,629,396	86.1	87,549	3.3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91,558	9.1	233,486	7.6	58,073	24.9
	기타이전수입	8,210	0.3	2,634	0.1	5,576	211.6
자체수입	소 계	55,538	1.7	42,236	1.4	13,302	31.5
	교수-학습 활동수입	29,608	0.9	29,636	1.0	△28	△0.1
	행정활동수입	605	0.0	586	0.0	19	3.2
	자산수입	10,415	0.3	1,142	0.0	9,273	812.0
	이자수입	13,165	0.4	10,098	0.3	3,068	30.4
	금융자산회수	1	0.0	0	-	1	순증
	잡수입	1,744	0.1	775	0.0	969	125.1
기타	소 계	146,323	4.5	144,898	4.7	1,426	1.0
	전년도이월금	146,323	4.5	144,898	4.7	1,426	1.0

다.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4%인 1,659억 3천만원이 증액된 3조 2,185억 7천만원으로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 예산액 2조 8,782억 9천만원보다 674억 6천만원(2.3%)이 증액된 2조 9,457억 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1.5%를 차지하며
 - 인적자원운용은 정규직인건비 322억 6천만원 등이 감액되고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0억원 등이 증액되어 총 298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 교수 - 학습활동지원은 외국어교육 69억 9천만원, 전문계고교육 68억 6천만원, 특별활동지원 106억 2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유아교육지원 9억 7천만원, 학교평가관리 34억 2천만원이 감액되는 등 418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교육격차해소 예산은 학비지원에 51억 6천만원 등 70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보건/급식/체육활동에는 급식관리 6억 4천만원, 각종체육대회활동 4억 6천만원이 증액되고, 보건관리 4천만원이 감액되어 10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에 학교운영비지원 57억원, 사학재정지원에 224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281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는 학교일반시설에 141억 5천만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17억 2천만원이 증액되고, 학생수용시설에 66억 7천만원이 감액되어 192억원이 증액되었음.
- 평생·직업교육비는 기정 예산액 99억 8천만원보다 35억 2천만원(35.3%)이 증액된 13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4%에 해당하며
 - 평생교육 예산은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에 11억 1천만원, 독서문화 진흥에 5억 5천만원이 증액되고,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운영에 5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업교육 예산은 직업진로교육에 19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교육일반비는 기정 예산액 1,643억 8천만원보다 949억 4천만원(57.8%)이 증액된 2,593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1%를 차지하며
 -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시설사업관리에 10억 6천만원, 재무 관리에 5억 8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교육행정정보화 8억원, 학생수용계획 5억 9천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교육행정기관시설 111억 5천만원,

기본운영비 1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112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민간투자사업상환에 1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218,574	100.0	3,052,649	100.0	165,925	5.4	
유아 및 초중등 교 육	소 계	2,945,755	91.5	2,878,291	94.3	67,464	2.3
	인적자원운용	1,529,179	47.5	1,559,033	51.1	△29,854	△1.9
	교수-학습활동 지원	340,046	10.6	298,219	9.8	41,827	14.0
	교육격차해소	121,891	3.8	114,832	3.8	7,059	6.1
	보건/급식 /체육활동	29,583	0.9	28,513	0.9	1,070	3.7
	학교재정 지원관리	730,677	22.7	702,512	23.0	28,165	4.0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94,379	6.0	175,182	5.7	19,197	11.0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평 생 직업 교 육	소 계	13,499	0.4	9,979	0.3	3,520	35.3
	평생교육	7,577	0.2	5,973	0.2	1,604	26.9
	직업교육	5,922	0.2	4,006	0.1	1,916	47.8
교 육 일 반	소 계	259,320	8.1	164,379	5.4	94,941	57.8
	교육행정일반	29,289	0.9	29,303	1.0	△14	△0.0
	기관운영관리	79,685	2.5	68,400	2.2	11,285	16.5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4,521	1.1	34,638	1.1	△117	△0.3
	예비비 및기타	115,825	3.6	32,038	1.0	83,787	261.5

□ 세출예산의 기관별 편성내역은

- 본청 예산은 인건비 예산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감액되고 각종 정책사업 및 학교시설사업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 2조 2,960억 6천만원보다 1,170억 9천만원(5.1%)

증가한 2조 4,131억 5천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75.0%를 차지하며

- 교육연구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예산은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가 감액편성되어 기정예산 364억 5천만원보다 11억 6천만원(△3.2%) 감소한 352억 9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 포항교육청을 비롯한 23개 지역교육청은 각종 사업비 및 시설사업비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7,201억 4천만원보다 499억 9천만원(6.9%)증가한 7,701억 3천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23.9%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218,574	100.0	3,052,649	100.0	165,925	5.4
본 청	2,413,147	75.0	2,296,057	75.2	117,090	5.1
직속기관	35,293	1.1	36,452	1.2	△1,159	△3.2
지역교육청	770,134	23.9	720,140	23.6	49,994	6.9
포항교육청	134,791	4.2	121,305	4.0	13,486	11.1
경주교육청	73,291	2.3	67,735	2.2	5,556	8.2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증감액	증감률
김천교육청	43,713	1.4	41,956	1.4	1,757	4.2
안동교육청	44,653	1.4	42,462	1.4	2,192	5.2
구미교육청	87,775	2.7	79,579	2.6	8,197	10.3
영주교육청	33,683	1.0	31,660	1.0	2,023	6.4
영천교육청	28,321	0.9	26,583	0.9	1,738	6.5
상주교육청	37,471	1.2	35,713	1.2	1,758	4.9
문경교육청	21,600	0.7	19,822	0.6	1,778	9.0
경산교육청	68,415	2.1	62,016	2.0	6,399	10.3
군위교육청	8,885	0.3	8,711	0.3	174	2.0
의성교육청	19,533	0.6	18,665	0.6	868	4.6
청송교육청	13,645	0.4	12,578	0.4	1,067	8.5
영양교육청	8,799	0.3	8,031	0.3	768	9.6
영덕교육청	14,499	0.5	21,221	0.7	△6,722	△31.7
청도교육청	16,325	0.5	15,386	0.5	939	6.1
고령교육청	15,253	0.5	14,617	0.5	636	4.4
성주교육청	18,200	0.6	17,685	0.6	515	2.9
칠곡교육청	28,577	0.9	26,510	0.9	2,067	7.8
예천교육청	14,411	0.4	13,000	0.4	1,411	10.9
봉화교육청	14,841	0.5	13,755	0.5	1,086	7.9
울진교육청	18,029	0.6	16,167	0.5	1,862	11.5
울릉교육청	5,424	0.2	4,984	0.2	439	8.8

5. 검토의견

가. 총괄

-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지방교육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각종 교육시책사업의 추진과 도 교육청의 역점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
-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로 증액(261.5%) 부분이 많은데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 편성을 지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예비비 증액 자체가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이 연말에 집중하여 전입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세출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사료되므로, 각종 이전수입에 대하여 조기에 전입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지정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조기에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나. 주요사업별 검토

-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 명시이월 예산은 예산집행의 신속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나, 국가재정법 제3조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

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임.

- 금회 추경에는 190건 86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135건 1,355억 5천만원에 비하여 494억 5천만원(△36.5%)이 줄어든 것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예산의 과다한 이월은 적정한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여 교육 과정 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학교 회계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전한 재정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사업취소로 인한 전액감액 사업과 관련하여

-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예측을 통해 실현 가능성 여부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사업취소로 인하여 감액된 사업²²⁾이 상당부분이 있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충분한 자료 수집과 검토로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2) 참고자료 참조

□ 각종 시설사업 추진철저

-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 184억 2천만원, 학교일반시설 141억 5천만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17억 2천만원, 본청 시설 68억원, 직속기관 시설 4억 6천만원, 지역교육청 시설 38억 9천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학교시설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정리추경시에 편성이 많아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매년 명시이월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 정리 추경시에 시설사업들이 편성되는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적기에 자금이 전입되지 않은 것도 주요한 사유가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이월사업 과다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59억 3천만원(5.4%)이 증액된 3조 2,185억 7천만원의 규모로 특별교부금, 국고 보조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기타 지원금 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 기정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액 중 상당부분이 감액되었고, 금회 추경에 편성된 전체 예산의 51.9%의 규모가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 중앙 정부 및 도와의 협조를 통해 자금이 최대한 빨리 교부될 수 있도록 세입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분석·검토와 예산집행 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소중한 교육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주요사업별 사업취소 내역(시설사업제외)
2. 시설사업 사업취소 내역

◆ 주요사업별 사업취소 내역(시설사업제외) ◆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편 성 액	감 액	페이지
과학직업교육과	산업교육활성화장학금지원	1,440,240	△1,440,240	398
교 육 과 정 과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 구축	196,750	△196,750	264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1,339,000	△1,339,000	307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23,000	△23,000	309
	특수교육관리자연수	8,350	△8,350	325
	초등논술교육지원단	6,240	△6,240	342
교 육 정 책 과	단위학교자율권확대	21,590	△21,590	824
안동교육지원청	학교보건관리	1,632	△1,632	594
영주교육지원청	행정보조원인건비	4,000	△4,000	158
	과학교실운영(과학자료구입)	1,500	△1,500	383
군위교육지원청	유치원평가	3,240	△3,240	304
	원어민활용영어교사직무연수	2,400	△2,400	362
의성교육지원청	원어민활용영어교사직무연수	2,400	△2,400	362
	건전재정운용추진	1,000	△1,000	860
청송교육지원청	유치원평가	3,240	△3,240	304
	셋째이후자녀교육비	3,540	△3,540	556
영양교육지원청	유치원평가	3,240	△3,240	304
	원어민활용영어교사직무연수	2,400	△2,400	362
	셋째이후자녀교육비	11,808	△11,808	556
영덕교육지원청	유치원평가	4,760	△4,760	304
	셋째이후자녀교육비	8,856	△8,856	557
	학습동아리운영	2,400	△2,400	824
	학생수용계획지원	584,847	△584,847	878
칠곡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평가	6,100	△6,100	818
울진교육지원청	유치원평가	5,520	△5,520	305

◆ 시설사업 사업취소 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사 업 지	편 성 액	감 액	페이지
교 육 시 설 과	영재학교기본계획설계비		370,000	△370,000	684
	급식소보수(냉난방시설)	포 향 여 고	38,100	△38,100	696
	전기시설개선	영천정보고	11,660	△11,660	730
학 교 지 원 과	교실냉난방개선	경 산 여 자 전 산 고	95,250	△95,250	667
	교실냉난방개선	이 서 고	45,000	△45,000	667
	본관동옥상난간대및 계단눈슬립설치	금 호 공 고	35,000	△35,000	671
경 상 북 도 립 안 동 도 서 관	노후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15,000	△15,000	916
영주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영 광 중	180,000	△180,000	675
	담장설치	안 정 초	10,000	△10,000	714
	청사대수선 (테니스장편의시설설치)	영 주 교 육 지 원 청	10,000	△10,000	919
군위교육지원청	창문개체	대 울 초	36,840	△36,840	716
의성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다 인 중	75,000	△75,000	714
성주교육지원청	기타학교환경개선시설 (교실바닥보수)	지 사 초	4,000	△4,000	723
영양교육지원청	우천통로설치	입 암 초	76,000	△76,000	729
	배수로설치	입 암 초	23,000	△23,000	730
	진입로포장	입 암 초	18,000	△18,000	732
영덕교육지원청	교사개축	영 덕 초	7,147,884	△7,147,884	686
청도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매 전 초	112,000	△112,000	705
	전기간선용량증설	매 전 초	11,070	△11,070	728
봉화교육지원청	지붕개체	소천초임기 분 교 장	46,728	△46,728	732

6.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조서별첨)
9.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조서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순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감 액	비고
1	474	교육과정과	글로벌예절체험관설치운영	△306,069	
2					
3					
4					
5					
6					
7					
8					
9					
10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증 액	비고
계				
928	행정예산과	예 비 비	306,069	

■ 건 의 안

-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6차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총회'에서 2015년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문경 개최가 확정 발표되었다.
- 문경을 중심으로 도내 7개 시군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참가예상 선수단 규모가 26개 종목에 110여 개국 10,000명이 넘는 하계올림픽에 버금가는 큰 대회이며, 경제적 파급 효과는 6,488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3,01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5천 6백명의 고용 창출, 1조 7,000억원의 간접적 파급효과가 있어 국가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상북도와 문경 등 7개 시군은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통해 국가의 브랜드 가치와 자긍심 고취, 군인체육 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동북아 중심 자치단체로의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역대 어느 대회보다 훌륭하게 치루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군인들의 제전을 개최하는 자체가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개최된 제5회 리우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북한 선수단장이 표명한대로 2015년 대회에 북한의 참가가 성사된다면 우리나라 안보

불안을 해소시키고,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 분위기 조성
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러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경기장, 선수촌 등 대회관련시설의 적기 건설을 위한 예산 지원, 대회 조직위원회 및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회 지원위원회 구성 등 범정부적으로 원활한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이에 300만 경상북도민의 염원을 모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건의 하는 바이다.

2011년 12월 8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 결 의 안

-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결의안

한민족의 혼(魂)이 살아 숨쉬는 우리 문화재는 우리의 역사와 정신 그 자체이다. 때문에 문화재의 훼손과 유실은 우리의 문화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재 일부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사회적 혼란기에 유출되어 아직도 국외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치유하고 인류문화 복원을 위해서 우리 문화재를 제자리에 되돌려놓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할 때이다. 특히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고인 경북의 문화유산을 되찾음으로써 옹도경북의 혼과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경상북도에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운동을 펼쳐나갈 민간주도의 법인이 설립되어 문화재환수를 위한 국가적차원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과 국민적 관심에 부응할 수 있게 됨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문화재환수로 우리의 역사와 얼을 되찾아 옹도 경북의 자존과 영광을 드높이고 경북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실태파악과 문화재환수 노력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체계적인 환수계획과 방안을 마련하고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논의 등을 통해 문화재 환수에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요구한다.

1.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중에 경북지역의 문화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는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인 전략하에 옹도경북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경북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확립하고 문화적 품격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모든 노력과 함께 할 것이며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11년 12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일동

참 고 자 료

1.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

(2011. 2월 현재, 단위 : 점)

소 장 국	현 소장 수량	주요 소장 처
일 본	65,331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37,972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영 국	3,628	영국박물관 등
독 일	10,770	켈른동아시아박물관 등
러 시 아	4,008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프 랑 스	2,093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7,930	북경고궁박물관 등
덴 마 크	1,278	국립박물관 등
캐 나 다	2,187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 델 란 드	42	리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스 웨 덴	50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 스트 리 아	743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 티 칸	298	민족박물관
스 위 스	18	민족학박물관 등
벨 기 에	56	왕립예술박물관
호 주	40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 태 리	17	국립동양도자박물관 등
카 자 흐 스 탄	1,024	국립도서관
대 만	2,872	국립고궁박물관원 등
형 가 리	203	헤렌쯔호프동양미술박물관
계 (20개국)	140,560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 기관(국제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국외문화재 환수현황

(단위 : 점, 기준 : 2011. 5월 현재)

대상국	수 량	환 수 경 위					비고
		기 증	정부간 협상	구 입	영구대여	장기대여	
일 본	5,107	3,369	1,728	10			
미 국	1,233	1,144		88		1	
스 페 인	892	892					
독 일	657	657					
뉴질랜드	186	2		184			
이탈리아	59			59			
캐 나 다	20	20					
프 랑 스	300	3			297		
호 주	1	1					
노르웨이	1	1					
합 계	8,456	6,089	1,728	341	297	1	

의정 활동 보고서

(제250회 임시회·제251회 정례회)



2012. 1 인쇄 / 2012. 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284

FAX : 602-5140



<비매품>

